

언론중재

ISSN 2005-2952

2022 Spring Vol.162

04

Focus On Media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와
피해구제에 관한 논의

46

사건 속 법률

악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플레이

82

판례토크

배드파더스, 왜 명예훼손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나



언론중재

2022 Spring Vol.162

인쇄

2022년 3월 25일

발행

2022년 3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044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편집위원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FOCUS ON MEDIA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와
피해구제에 관한 논의

1. 인격권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 04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신뢰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균형에서 싹튼다 18

이춘재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3. 메타버스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대응에 대한 논의 32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기고

데이터 기반 사회의 언론조정 40

최은진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차장

미국 듀크대학교 해외실무연수

사건 속 법률

악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플레이

: 주요 이슈와 제언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46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뉴스로 구독자를 모으겠다고요?

송승환 중앙일보 금융팀 기자

60

주목할만한 해외언론법제

프랑스의 언론소유권 재편을 위한 '정보의 민주화법' 제안... 향후 변화는?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68

판례토크

배드파더스, 왜 명예훼손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판결 분석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82

Journalism & Ethics

기자화 피디, 또는 사실과 스토리

김지영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대우교수
서울제4부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편집인

88

해외통신원

'정부의 미디어'는 가능한가?

독일 언론의 '국가와 거리두기(Staatsferne)'

원칙과 국정 홍보 사이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라이프치히대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 석사

94

칼럼

풍도(馮道)의 처세

박종권 호서대 융합학부 부교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前 언론중재위원

104

위원회 News

110



01

인격권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적 검토

권태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권과 가족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이러한 권리들은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인격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갖는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격권은 점점 더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인격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제751조, 제752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그 효과로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64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민법에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작년 가을부터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포럼’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글에서는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민법에 신설하는 법무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인격권의 보호체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법무부가 준비한 민법 개정안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3조의2 (인격권)

-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②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 (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¹⁾ 이는 2022년 2월말 기준으로 법무부에서 준비한 개정안이다. 입법예고 등의 입법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II. 인격권의 개념과 내용

1. 인격권의 개념

인격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권리의 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인격의 주체로서 개인이 갖는 권리,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 등으로 설명된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그동안 인격권의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은 처음으로 인격권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 법률 제5조 제1항은, 인격권을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규정한다.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두는 방안으로, ① 인격권의 대상인 인격적 이익을 규정하지 않고 인격권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② 인격권의 대상인 인격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²⁾ 인격권은 포괄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고³⁾ 생성중인 권리이므로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격권의 대상인 인격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안이, 인격권의 범위에 대한 불확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⁴⁾ 법무부 개정안 제3조의2 제1항은 인격권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을 나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 민법의 어느 부분에 둘 것인지도 문제된다. 법무부 개정안은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제3조의2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⁵⁾ 자연인에 관한 제2장 인(人)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스위스 민법도 자연인에 관한 장(Titel) 아래에 있는 “인격에 관한 권리(Das Recht der Persönlichkeit)”라는 절(Abschnitt)에서 권리능력, 행위

2) 2004년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의 대상인 인격적 이익을 규정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달리, 2014년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의 대상인 개별 인격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김재형 (1999). 〈인격권 일반〉, 민사판례연구 제2권, 서울: 박영사, 633면은, 인격권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로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 권리이며, 여러 권리와 구제수단을 발생시키는 모권(母權) 또는 기초권(基礎權)이라고 한다.

4) 김재형 (2011, 12).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제57호 53면은,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 인격권의 주요 대상을 예시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어 나은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5) 이와 달리 2004년 개정안은 민법 제1편(총칙)의 제1장(총칙)에 제3조의2(인간의 존엄과 자유) 조항을 신설하고 이 조항에서 인격권에 대해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능력, 주소 등과 함께 인격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일정한 범위에서 인격권을 가질 수 있는데, 법무부 개정안 제34조의2는 제3조의2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하고 있다.

2. 인격권의 내용

(1) 인격권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

인격권은 포괄적 성격을 가진 권리이고 생성중인 권리이므로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익이 인격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독일연방대법원은 기본법상 인간의 존엄에 대한 권리(제1조)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권리(제2조)에 근거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하면서, 일반적 인격권이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하였다.⁶⁾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가 인격권의 기본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⁷⁾ 현재 1991.4.1. 89헌마160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라 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이 인격권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생명·신체·자유·명예·사생활·개인정보 등도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된다.⁸⁾ 결국 어떠한 이익에 관한 자기결정이 인간의 존엄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그 이익은 인격권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도 인격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른바 간접효력설에 의하여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고, 그 결과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이 사법상 인격적 법익 또는 인격권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대판(전) 2010.4.22. 2008다38288은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6) BGHZ 13, 334 – Leserbrief.

7) 편집대표 박윤직 (2005). <민법주해> 제19권, 서울: 박영사, 417면(이재흥 집필부분). 그리고 현재 1990.9.10. 89헌마 82는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8) 편집대표 김용담 (2016). 주석민법 채권각칙(6), <한국사법행정학회>, 396면(김재형 집필부분). 대판(전) 2008.11.20. 2007다27670은 “자기결정권은 인격체인 인간이 내리는 모든 자율적 결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의 보충의견).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법상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래에서는 법무부 개정안에서 제시한 인격적 이익에 대해 살펴본다. 물론 법무부 개정안이 인격권의 범위를 제시된 인격적 이익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⁹⁾

(2)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생명, 신체, 건강, 자유에 관한 권리는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¹⁰⁾ 대판(전) 2008.11.20. 2007다27670의 반대의견¹¹⁾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에 해당하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9) 법무부 개정안 제3조의2 제1항은 “그 밖의 인격적 이익”도 규정하고 있다.

10) 주석민법 채권각칙(6)(주 8), 388면(김재형 집필부분).

11)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고 하였다. 그런데 생명, 신체, 건강, 자유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대부분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고, 인격권 침해가 명시적으로 주장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¹²⁾

(3) 명예

판례에 의하면,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명예훼손이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¹³⁾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에 의해 보호가 배풀어지는 명예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의미하는 명예와 신용훼손죄의 신용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¹⁴⁾

법인 기타 단체에 관해서도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있는 한 명예가 존재하고, 그 사회적 평가의 저해행위는 명예훼손을 성립시킨다고 설명된다.¹⁵⁾ 판례도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¹⁶⁾ 중증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도 명예훼손이 인정된다.¹⁷⁾

명예훼손의 개념과 관련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07조 제1항), 대법원 판결도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¹⁸⁾ 현재 2021.2.25. 2017헌마

12) 편집대표 박준서 (2002). 주석민법 채권각칙(7), <한국사법행정학회>, 56면(박철우 집필부분), 대판 2011.10.13. 2010다63720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3) 대판 1988.6.14. 87다카450 등.

14)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47면.

15) 민법주해 제19권(주 7), 428면(이재홍 집필부분).

16) 대판 1965.11.30. 65다1707; 대판 1996.6.28. 96다12696(법인을 상대로 여러 민원, 보전처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법인의 신용도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함); 대판 1999.10.22. 98다6381; 대판 2008.10.9. 2006다53146(고급 이미지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이를 저가로 유통시켜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함) 등.

17) 대판 1990.2.27. 89다카7275(대동보를 발간함에 있어 중증의 선대의 기재를 누락시킨 경우 그 중증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함); 대판 1997.10.24. 96다17851 등.

18) 대판 1967.7.25. 67다1000(장성한 자식들과 동거하고 있는 과부와 정교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이 문체된 사건). 이에 대하여 전원열 (2001).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5면은 문제된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비판한다.



1113, 2018헌바330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⁹⁾ 그러나 소위 허명(虛名)의 보호는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특히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견해²⁰⁾도 있다.

(4) 사생활

사생활에 관한 권리도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된다. 사적 영역 내지 사생활영역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므로 프라이버시권은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된다.²¹⁾

프라이버시권은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간직할 권리이고, 후자는 사생활의 설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된다.²²⁾

19) 헌법재판관 5인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중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20) 신평 (2014). <한국의 언론법> 제3판. 서울: 높이깊이. 445-446면.

21) 민법주해 제19권(주 7), 437면(이재홍 집필부분).

22) 민법주해 제19권(주 7), 439면(이재홍 집필부분).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Prosser의 분류방법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³⁾ Prosser는 프라이버시권이 서로 다른 4개의 이익에 대한 서로 다른 4개의 침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는 ① 은둔, 고독, 사적 사항에 대한 침입(intrusion), ② 당혹스러운 사적인 사실의 공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③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④ 도용(appropriation) 등이라고 하였다.²⁴⁾

(5) 초상권, 성명권

우리나라의 경우 초상권의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²⁵⁾ 학설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용모나 자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그림·스케치 등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 사진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권리 등으로 정의된다.

대판 2006.10.13. 2004다16280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선고된 판결들²⁶⁾도 동일하다.

성명권의 개념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결 2005.11.16. 2005스26은 성명권을 “이름(성명)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아래 둘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서,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성명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판 2009.9.10. 2007다71은 개인이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울고판 2015.1.30. 2014나2006219는 “성명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타인

23) 민법주해 제19권(주 7), 440면 이하(이재홍 집필부분), 다만 주석민법 채권각칙(7/주 12), 84면 이하(박철우 집필부분)는 Prosser의 분류방법에 따라 설명하면서도, 대륙법에서는 성명권과 초상권이 개별적 인격권으로 취급된다고 하면서 도용 유형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24) Prosser (1960), Privacy, 48 Cal. L. Rev. 383, 389. 이러한 분류 방법은 1977년에 발간된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The American Law Institute (1997), Restatement of the Law, Torts, 2d ed., §652A.

25) 독일에서는 예술저작권법(KUG) 제22조 이하에서 초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26) 대판 2013.2.14. 2010다103185; 대판 2013.6.27. 2012다31628 등.

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성명이 타인에 의하여 모용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결 2005.11.16. 2005스26은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6) 개인정보

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98.7.24. 96다42789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규정이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헌재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은,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가 문제된 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하였으며, 이후의 대법원 판결들도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을 받아들였다.²⁷⁾

판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결 2011.5.24. 2011마319는,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에 관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교원의 “인격권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판(전) 2011.9.2. 2008다42430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등을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²⁷⁾ 대판 2014.7.24. 2012다49933; 대판 2016.3.10. 2012다105482; 대판 2016.8.17. 2014다235080 등.



III.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인격권은 그 보호범위가 넓고 불명확하므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인격권이 다른 권리 또는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특히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은 다른 권리 또는 이익과의 형량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된다.²⁸⁾

언론중재법은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언론등이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와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²⁹⁾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³⁰⁾

법무부의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다른 권리 또는 이익과의 형량에 의해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과 다른 인격적 이익을 구분하여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다르게 형성해 왔으며

28) 민법주해 제19권(주 7), 424-425면(이재홍 집필부분) 등.

29) 주석민법 채권각칙(6)(주 8), 404면(김재형 집필부분)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상당한 이유’보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30) 다만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이를 인정한다.

로,³¹⁾ 위법성 판단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명예훼손과 다른 인격적 이익을 구분하여 규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는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격권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이익 또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인격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론구성하든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된다.³²⁾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는 주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된다. 민법도 신체, 자유, 명예 등이 침해된 경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751조 제1항), 생명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2조)고 규정한다.

그런데 인격권 침해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³³⁾ 특히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주로 문제된다.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금지청구권

법무부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은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31)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그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 대판 1988.10.11. 85다카29는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2) 주석민법 채권각칙(6)(주 8), 414면(김재형 집필부분).

33) 이에 대해서는 권태상 (2020. 2),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법조>, 제69권 제1호, 129면 이하 참조.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³⁴⁾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한다. 대판 1996.4.12. 93다40614는, 우유업계의 비방광고가 문제된 사건에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하였다.³⁵⁾ 법무부의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불법행위의 효과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에 의할 경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특정 행위를 막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설명하기 쉽다.³⁶⁾ 법무부 개정안은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민법 제214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법무부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은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764조도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항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에 의해 침해행위에 관련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금지청구권은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34) 스위스 민법 제28a조는, 인격이 침해된 사람이 그 침해행위의 제거와 임박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5) 대판 1997.10.24. 96다17851도 이 판결을 인용하며 유사하게 실시하였다.

36) 독일연방대법원도 일반적 인격권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BGHZ 30, 7 = GRUR 1959, 430 - Caterina Valente; BGHZ 50, 133 = NJW 1968, 1773 - Mephisto; BGHZ 128, 1 = NJW 1995, 861 - Caroline von Monaco 등.

이해되고 있다. 대결 2005.1.17. 2003마1477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³⁷⁾

한편 언론중재법도 금지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³⁸⁾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3항). 그리고 이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4항).

3.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현대사회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중재법은 그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외에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등도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권리이고(제14조 제1항),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등에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제16조 제1항).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그리고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언론사등에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권리이다(제17조 제1항).

37) 이 결정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제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38) 제30조 제1항의 피해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이어야 한다.

V. 나가며

이 글에서는 법무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인격권의 보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인격권에 관한 조항을 민법에 신설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인격권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을 나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자연인에 관한 인격권 조항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다른 권리 또는 이익과의 형량에 의해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언론중재법은 그 외에 정보보호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등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민법 제214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동일성이 갖는 재산적 이익은 인격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³⁹⁾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기대해 본다. 

³⁹⁾ 이에 대해서는 권태상 (2013).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파주: 경인문화사, 273면 이하 참조.

02

신뢰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균형에서 싹튼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 가세연이 던진 소셜미디어 규제 논란

‘총격단독, 영입인재 1호 혼외자 폭로’

2021년 11월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30대 ‘워킹맘’이자 우주·군사 산업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된 ㄱ씨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ㄱ씨가 현역 장교인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성과의 불륜 관계로 혼외자를 낳았고, 이를 부부의 아이로 속이고 있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사실이 드러나자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주고 이혼했다는 내용이었다. ㄱ씨는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에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ㄱ씨의 사퇴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사퇴 3일 후 ㄱ씨가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아무개 변호사는 <○○ 전 선대위원장의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ㄱ씨의 혼외자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었으며, ㄱ씨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출산을 했다”고 밝혔다.¹⁾ 가세연의 ‘불륜 관계에 의한 혼외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가세연은 ㄱ씨의 입장문 공개 이후에도 ‘○○시리즈’를 준비한다며 사생활 캐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ㄱ씨 의혹을 다룬 책을 출간하겠다고 공언했다.

가세연은 언론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가세연 방치하는 유튜브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녀 이름·얼굴까지 공개하는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에 ㄱ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며 가족을 향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략) 가세연 콘텐츠는 명백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정치적 입장에 따른 증오표현”이라며 유튜브 쪽에 가세연 채널 폐쇄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도 가세연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잘못된 정보 조항을 위반했다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쪽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²⁾

가세연의 ㄱ씨 관련 라이브 영상 조회수는 60만회를 넘겼고, 라이브 방송도중 받은 슈퍼챗으로 일주일(11월 29일~12월 5일) 동안 1,6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가세연은 이 기간 동안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 1위에 올랐다. 이

1) 윤김나영 (2021. 12. 5). ㄱ씨 측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 <경향신문 인터넷판>.

2) 장세인 (2022. 1. 20).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 선 언론인들, “가세연” 방치 사회적 책임져야”. <PD저널>. URL: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00>

수익의 30~40% 가량은 수수료 명목으로 유튜브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³⁾ 가세연 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 보도한 기성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가세연의 폭로에 이어 종편을 비롯한 일부 기성언론들의 경마식 보도가 이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말장난 낚시를 던져 ‘돈 쓰는 독자’를 꾀는 데 혈안인 몇몇 개인 매체의 주장에 기댄 보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가세연 사태는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⁴⁾와 관련해 중요한 질문들을 던졌다. ‘소셜미디어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소셜미디어에 인격권 침해(명예훼손)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적인 질문들이다. 가세연의 행태는 분명 표현의 자유 영역을 뛰어넘은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규제 만능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격권 침해 vs 표현의 자유

‘가세연 논란’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과 기본 구조가 같다. 가세연은 언론사가 아닌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세연처럼 언론을 지향하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소셜미디어를 언론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은 언론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확장으로 소셜미디어는 대중화 단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만 1살 이상)의 65.2%가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91.9%, 30대 84.9%, 40대 74.5%, 6~19살 59.4%였다. 만 6살 이상 SNS 이용자의 주평균 이용 빈도는 22.0회(하루 평균 3.1회)였다. 주 평균 SNS 이용시간은 53분으로 조사됐다. 이는 날이 갈수록 열독률과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신문과 대조적이다.

3) 손가영 (2022. 1. 20). “가세연 슈퍼챗 수수료 받는 유튜브, 책임감이 없다”.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4289

4) 황용석(건국대) 교수는 《SNS와 언론보도》(2011)에서 “종종 소셜미디어와 SNS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의 개념을 손쉽게 정의하고자 한다면 ‘이용자간의 관계망을 통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하는 서비스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소셜미디어는 SNS와 유튜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의견과 정보가 교환되는 속도와 규모는 기존 언론을 뛰어넘는다.⁵⁾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이 <CNN>의 긴급 뉴스 타전으로 시작됐다면, 이번 전쟁은 구글 지도에서 시작됐다.⁶⁾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벨고로드(Belgorod)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날 새벽 3시 무렵부터 구글 지도에서 붉은색으로 변해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폰 사용자를 자동 추적해 교통량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 러시아 탱크와 군용차들이 국경을 넘어오자 현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몰려들면서 구글 지도에 도로 혼잡 신호가 뜬 것이다. 구글맵이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을 제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을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린 것도 소셜미디어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 후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부 청사를 배경으로 자신과 주요 각료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 동영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불태웠고, 전 세계 민주 진영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끌었다. 소셜미디어는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러시아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반전 여론을 주도했다.

5) 황용석 (2011), SNS와 언론보도, 2011년 정책심포지엄, <언론중재위원회>.

6) 유민호 (2022, 3. 7), 우크라이나, 새로운 전쟁의 시작... SNS 전쟁을 공유하다, <주간조선> 2698호, URL: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ew.asp?nNewsNumb=002698100001&ctcd=C07>

이는 기존 언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소셜미디어의 강점이다. 이런 점에서 소셜미디어의 기능과 영향력은 이미 언론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에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을 소셜미디어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물론 소셜미디어의 사실 확인 및 검증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 황용석 교수(건국대)는 “SNS 상의 검증은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실을 확인해줄 판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띠는 소식의 경우 검증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간적·기술적 한계를 강조했다(2011년). 하지만 이런 한계가 소셜미디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가세연 논란’의 쟁점은 인격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이다. 두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어느 한쪽의 권리가 강조되면 다른 쪽은 침해된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제3자의 개입 없이 화해나 타협이 어려울 정도로 배타적이다. 문제는 인격권 보호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사적인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로 이해됐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그에 비례해서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인격권 보호의 확장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대법원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사건⁷⁾에서 ‘자기 정보의 자율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⁸⁾ 하지만 이때만 해도 ‘자기 정보의 자율 통제’는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저항권 성격이 강했다.

실질적인 자기 정보의 자기 통제권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구체화됐다. 인

7)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가 정치계·노동계·종교계·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 1,303명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을 폭로했다.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한승헌·김승훈·문동환·이효재 등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터넷은 개인정보 공개의 피해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시켰다.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해진 만큼 인격권 보호의 영역도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 실명 공개 사건에서 내린 판단은 이를 잘 보여준다. 대법원은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건에서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했다. 전교조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제3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했다. 그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영역도 크게 확장했다.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은 전교조 가입 교사 실명 공개를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널리 공표할 필요성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게시된 정보가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해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한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⁹⁾

개인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이 판례는 인격권 보호의 영역을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정보를 공개할 때는 물론 이미 공개된 정보의 처분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된 것이다. 인터넷에 저장돼 있는 자기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가 대표적이다. 잊혀질 권리는 2014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구글 검색엔진에 노출된 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한 판결을 통해 공식화됐다. 스페인의 한 남성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 링크된 자신의 과거 부채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남성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다. 구글은 제3자가 개인정보를 복제하거나 인용해서 발행한 콘텐츠

9)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잊혀질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개념이다.¹⁰⁾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인터넷의 확장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인간의 기억을 보조하는 도구가 된 세상에서는 잊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기록되고 언제 어디서나 호출된다. 이처럼 디지털화된 세상에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적 관계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두드러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인격권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확장돼 왔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두 권리의 충돌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강도는 더욱 세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격권의 확장이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법원이 인격권 침해, 즉 명예훼손의 민·형사 책임을 다룰 때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¹⁾ 라고 설명했다. 공익성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록 인격권을 침해했다 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언론 보도의 공익이 인격권 침해의 사익보다 크다면 표현의 자유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계는 칼로 무를 자르듯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사회 구조가 다층적이고 복잡해지면서 공공과 개인의 영역, 공인과 사인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을 가리켰던 공인(公人)은 지금 ‘사회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그러나 무엇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까지 벌어진다. 한쪽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범죄행위로 비난받는 보도가

10) 구분권 (2016). <나에 관한 기억을 지우라>. 서울: 풀빛.

1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3. 인격권 확장의 합정, 언론중재 법 개정안 논 란

다른 한쪽에선 공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 차원의 보도로 평가받는다. 과거에는 훌륭한 인사검증 보도로 칭찬받던 기사가 정치적 상황이 바뀐 뒤 정략적 의도를 가진 보도로 폄하되기도 한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 정치적 역학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여름 언론계를 들쭉서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¹²⁾ 논란은 진영논리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가짜뉴스(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옹호하는 쪽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한 언론의 횡포를 강조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짜뉴스를 막기보다 정당한 보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반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2005년 삼성 엑스(X)파일 사건¹³⁾ 이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처럼 보도 당시에 사실관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보도들은 언제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단체들이 “자의적 해석과 오남용으로 비판적인 언론을 질식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발한 이유다.¹⁴⁾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이 진영논리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여권은 과거 엑스파일,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훌륭한 보도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권은 이 사건들이 처음 보도됐을 때 ‘허위·조작 보도’라고 깎아내렸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쪽은 “언론중재위로 가든 소송으로 가든 최소 두 달 이상은 걸리는데 그 기간에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 입는 손해가 막대하다. 피해자의 권리는 최대한 늘리되 남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으려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단 법으로 만들어지면 ‘남용 가능성’을 줄이

12)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021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뒤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다.

13)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 ‘엑스파일’ 내용이 2005년 〈MBC〉의 보도로 세상에 공개됐다. 엑스파일에는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 대선 자금 제공,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등을 논의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14) 신지민 (2021. 8. 20). 언론중재법 개정안, 뭐가 문제길래? 〈한겨레21〉 1377호. URL: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795.html



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 관료, 기업인들처럼 부와 권력을 가진 쪽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현직 감사장의 ‘공짜 주식 대박’ 사건은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의 대표적 사례다. 그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한 현직 감사장이 156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해 법원과 검찰을 통틀어 재산 랭킹 1위에 올랐다. 일선 검사 시절 비상장주식인 게임회사 빅슨의 주식 80만여 주를 매수한 뒤 10여년 후 감사장 승진을 앞두고 이를 처분해 120억여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현직 감사가 뭉치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100억대의 수익을 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서 주식 취득 과정과 자금 출처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¹⁵⁾ 그러자 그의 투자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감사는 물론 그가 몸담고 있는 검찰의 거센 항의가 빚발쳤다. 기사를 쓴 기자와 해당 언론사에 반론 및 정정보도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3개월 뒤 그는 오랜 친구사이인 게임회사 창업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현직 감사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되는 수

15) 최현준 (2016. 3. 28). [단독] 진경준 감사장 '수상한 38억 주식 대박'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7119.html



모를 겪었다. 검찰은 그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으로 남게 됐다.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논의됐던 열람 차단청구권이 당시 있었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분명 있다. 하지만 언론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뒤따른다. 특히 권력형 비리 사건의 추적 보도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일선 기자가 막대한 소송비용과 장기간 소요되는 시간을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자의 후속 보도 의지는 약해지기 마련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쪽은 이를 노리고 소송을 남발할 것이다.

인격권 확장의 최대 수혜자가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되는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최근 한 미국 기업인의 비리에 대한 영국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사실을 보도한 <블룸버그>에 거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판결”이라고 소개했다.¹⁶⁾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블룸버그는 당시

¹⁶⁾ The Economist (2022, 2, 19). British privacy law now rivals libel law in gagging the press. <The Economist>. URL: <https://www.economist.com/britain/2022/02/19/british-privacy-law-now-rivals-libel-law-in-gagging-the-press>

영국의 수사기관이 한 미국 기업의 영국 파트너사에 이메일을 보내 해당 기업인의 개인 정보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기사로 썼다. 그 기업인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 기업인은 수사가 종결된 후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고, 영국 대법원은 2022년 2월 블룸버그가 그 기업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한 것이다. 심지어 블룸버그는 그 기업인의 실명을 쓰지 않았음에도(ZXC라는 가명으로 보도) 영국 대법원은 2만 5,000 파운드(약 4천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가명으로 보도했음지라도 그의 인격에 입힌 손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경험적으로 볼 때 그 피해는 확고할 뿐 아니라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도 기소되기 전까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영국 언론들은 지적했다. 기소되기 전 보도된 기사에 대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블룸버그는 자사 웹사이트에 “이번 판결이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반박글을 올렸다. 부자나 권력자는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자신의 정체를 쉽게 숨길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방해한다. 기업 범죄는 내부자의 수사 협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수사는 이런 협조를 기대하기 힘들다. 언론의 관심과 견제는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유인한다. 또 성폭행이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는 피의자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될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기소될 때까지 이름을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추가 범죄를 은폐시킬 우려가 크다.

4. 소셜미디어의 자기검열과 표현의 자유

권력층과 부유층이 인격권 확장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담긴 새로운 도전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압박한다. 안타깝게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과거 독재 정권의 압박에 저항했던(지금도 저항하고 있는)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걸었던 고난의 행군 대신 타협의 길을 택하고 있다.¹⁷⁾

17) The Economist (2020, 10, 22). Social media's struggle with self-censorship. (The Economist). URL: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10/22/social-medias-struggle-with-self-censorship>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14일 트위터는 〈뉴욕포스트〉가 당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쓴 기사를 퍼나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기사가 유해 콘텐츠로 분류됐다는 게 이유였다. 페이스북 가입자들은 아예 이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페이스북의 팩트체커가 이를 검사하는 동안 이 콘텐츠의 노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당시 한주 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토론된 콘텐츠였다.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어두운 방에서 체제 반대자를 고문했던 독재자를 대신해 지금 실리콘밸리의 좀팽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가입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입자의 글에 순위를 매기거나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어떤 콘텐츠가 허용되고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 음모론’과 같은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가 점점 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튜브는 과거 시리아군의 만행을 찍은 동영상상을 ‘폭력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삭제했는데, 이 동영상들은 전쟁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소셜미디어의 가이드라인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은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콘텐츠를 ‘역사왜곡’이라는 이유로 금지한다. 틱톡은 2020년 상반기에만 1억 5백만 개의 동영상상을 삭제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압박은 증가하고 있다. 구글은 2019년 미국 정부로부터 3만 건에 이르는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10년 전에는 이런 요청이 수천 건에 불과했다. 페이스북도 같은 해 3만 3,600건의 콘텐츠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 유럽재판소는 2019년 유럽연합 국가들이 페이스북에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가입자의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의 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정부나 규제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일단 도입된 규제는 수정이나 개선 과정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의 양은 방대하고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자율규제만으로는 인격권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관용의 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기업과 이용자(혹은 이용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한계 못지않게 정부의 일방적 규제의 폐해 또한 크기 때문이다. 진보-보수 진영의 대립이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시점이 이런 논의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정치권과 정부, 법원, 검찰, 언론 등 제도적 신뢰 기관의 신뢰도가 열악한 상황인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는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

03

메타버스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대응에 대한 논의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I. 메타버스와 불법행위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하는 성폭력이 최근 문제가 되었다. 2021년 12월 22일 메타버스 업체 카부니(Kabuni)의 니나 제인 파텔(Nina Jane Patel) 부사장은 ‘현실인가 가상인가?’라는 제목으로 메타(Meta, 구(舊) 페이스북)의 VR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서너 명의 남성 아바타에 의해 성범죄를 당했다고 기고하여 충격을 던졌다.¹⁾ 파텔 부사장은 당시 메타버스에서 겪은 성범죄 충격이 현실세계에서 겪는 성범죄로 인한 충격과 다르지 않다고 서술했다. 가상현실(VR) 헤드셋을 벗어던진 뒤에도 파텔 부사장은 가해자들의 웃음소리와 ‘싫어하는 척 하지 마라고 외치던 음성을 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메타버스가 현실세계와 유사하도록 설계된 만큼 성범죄 피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메타버스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 가상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일 뿐 현실세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고, 애초에 메타버스에서 여성 캐릭터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호라이즌 월드’는 아바타 간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아바타 간에 4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바타 주변에 ‘개인 경계’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추가하였다.

‘호라이즌 월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성범죄 가능성의 전조에 불과하다.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를 단순히 가상현실에서 발생하는 해프닝 정도로 보기에에는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메타는 가상현실 속의 물체를 손으로 느낄 수 있는 햅틱 장갑 시제품을 개발한 바 있다. 햅틱 장갑을 끼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AR) 세계에 들어가면 제어 시스템이 장갑 패드의 팽창 수준을 조정하여 각각 다른 부분에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손가락으로 가상 물체를 만지면 그 물체가 피부를 누르는 느낌을 내어서 물리적으로 어떤 물체를 만지는 느낌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로 보건대 조만간 햅틱 장갑을 끼고 메타버스에서 직접 물체나 사람과 접촉하고 감각을 느끼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2018년 개봉하여 인기를 끌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등장인물들이 착용했던 것처럼 고글과 헤드셋, 글러브 등으로 구성된 햅틱 슈트를 착용

¹⁾ Nina Jane Patel (2021, 12, 22), Reality of Fiction?,

URL: <https://medium.com/kabuni/fiction-vs-non-fiction-98aa0098f3b0>

하고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대신하여 느끼는 자극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도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햅틱 장갑이나 햅틱 슈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라면 이를 가상세계의 범죄만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가 느끼는 신체적 접촉감과 불쾌한 감정, 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현실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설정 환경과 아바타를 정교하게 구현하여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의 체험을 하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메타버스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네이버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는 최근 글로벌 누적 가입자 3억 명을 돌파했다.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들도 메타버스에서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메타버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거나 다른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국내외 유명 연예인들이 메타버스 콘서트나 공연을 여는 것도 이미 트렌드가 되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쇼핑몰, 교육기관, 병원과 은행을 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도 있다. 미디어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영화 보는 것에 익숙해졌듯이, 조만간 메타버스에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즐기고 공부하는 것도 현실이 될 전망이다.

메타버스가 급성장할수록 다양한 법률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도



박이나 사기, 절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 관련 분쟁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6월 전미음악출판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는 미국의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를 상대로 약 2억 달러(한화 2,2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전미음악출판협회는 로블록스가 라이선스 계약 없이 가상 음악 재생장치를 통해 플랫폼 안에서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해 9월 양 당사자는 합의에 도달했다. 향후 음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미술품, 건축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나 메타버스 아이템과 관련한 상표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아직 메타버스가 본격적으로 실생활과 접목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아바타를 대상으로 성범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인격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메타버스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머지않아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인데 관련 논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II. 아바타에 대한 인격권 침해 가능성

인격권은 매우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명예, 성명, 초상, 사적 영역 및 정보 등과 같이 인격과 관련을 맺는 모든 이익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인격권은 인격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총칭하는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인격성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인격권이란 인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권리와 관련성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포괄성'과 '애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세기 유럽에서는 인격권을 독자적 권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와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후 인격권은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양천수(2011)는 서구에서 인격권이 발전해온 과정을 분석하면 크게 인격권의 '탈(脫)도덕화'와 '탈(脫)존재화'라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본다.²⁾ '탈도덕화'는 모든 법적 권리의 도덕적 기초가 되었던 인격 그 자체가 독자적 권리로 보장받게 된 것을 뜻한다. 그 다음으로 '탈존재화'는 존재적 권리가 아닌 인격권이 그 자체로서 권리보장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 등과 같은 인격권은 분명한 존재적 대상을 갖고 있지 않는 '탈존재화

2) 양천수 (2011),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법과 정책연구>, 11(3), 1139-1165p.

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격권의 발전 추세를 고려한다면 추후 아바타에 대해 인격권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나의 실체적 존재는 아니지만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나를 대신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경제적, 법률적 활동을 한다면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에게 인격과 관련된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더욱 발전하고 현실세계와 정교하게 교차될수록 아바타의 법적 지위와 인격권에 대한 문제도 복잡하게 펼쳐질 것이다. 가령 메타버스에서 명성을 쌓은 나의 아바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거나 아바타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확장현실(XR)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통한다면 기존에 수집되지 않았던 개인 정보까지 수집 가능하다. 아이 트래킹(eye tracking) 장치를 통해 이용자의 시선이동 데이터가 수집 및 분석될 수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교류하는지 어떤 주제를 탐색하는지를 수집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을 재구성할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³⁾ 결국 현실세계의 인간이 메타버스를 통해 재구성되고 그의 행동과 생각이 감시 대상이 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상의 인격권 침해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격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토대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부터 법무부는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인격권 관련 조항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이 민법으로 보장된다면 ‘원하지 않는 녹음과 촬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학교폭력, 층간소음, 딥페이크, 메타버스의 아바타 등 현대사회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⁴⁾ 이러한 인격권 명문화 작업이 이루어지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아바타와 관련된 초상권 침해는 조만간 현실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제페토에서 BTS 등 유명인의 얼굴을 본떠 아바타를 만드는 현상을 두고 초상

3) 이진규 (2021). 메타버스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윤리- 논의의 시작을 준비하며. <KISA REPORT>, Vol. 2.

4) 김길환 (2021. 11. 27). 법무부 미래시민법포럼... 디지털콘텐츠 계약, 인격권 민법 도입 검토. <로리더>, URL: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2>

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언론 기사도 나오고 있다.⁵⁾ 이번 대선을 앞두고 몇몇 정치인들은 제페토 유세장에서 자신의 모습과 닮은 아바타를 활용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메타버스 기술이 발달할수록 실존인물과 더 유사하게 생긴 아바타가 나올 것이고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본떠서 아바타를 만든다면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내 모습과 유사한 아바타를 타인이 활용한다는 그 자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나의 모습을 베낀 아바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손해는 훨씬 클 것이다. 장차 메타버스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되는 것까지 상상해보면 그 복잡함과 당장 해결책 없음을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와 닿지 않거나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불과 25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명예훼손,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온라인 성범죄라는 용어는 생경하기 짝이 없었던 것을 떠올려보자. 20여 년 후가 아닌,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아바타 명예훼손이나 메타버스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에서 주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III. 메타버스 성범죄와 향후 논의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들은 현실세계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적용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음란한 화상, 음향을 내보내는 것을 처벌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적용하여 플랫폼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음향을 보내는 것을 벌할 수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목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대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메타버스에서 아동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스토킹 행위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 이정환 (2021. 7. 24). 제페토에 BTS 똑 닮은 캐릭터 만들면 초상권 침해일까. (세계일보), URL: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23513711>



그러나 현행법이 메타버스에서의 성범죄 대응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 아바타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 설정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처벌이 현실세계와 같은 정도가 되어야할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메타버스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성범죄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적 인격권'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인 '성적 인격권'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이 피해자에게 도달했는지, 해당 표현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범죄가 문제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스스로 가학적 행동을 하는 사진을 가해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다면 강제추행이 될 것인가? 2018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사건(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에서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自手犯)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

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 그루밍 범죄를 통한 강제추행도 처벌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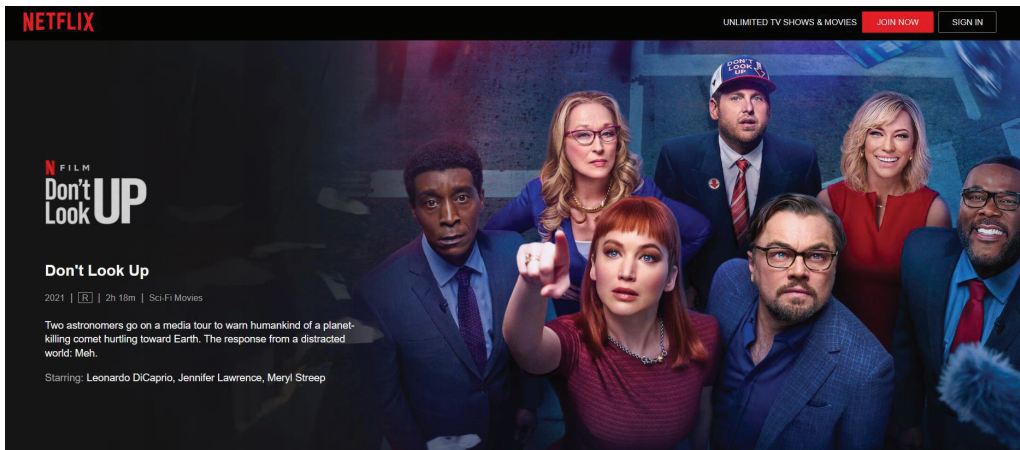
실제로 제페토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가 있었다. 캐나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1세 김모 양은 제페토에서 공주님, 왕자님 놀이를 하자는 남성 이용자를 만나게 됐다. 이 남성은 제페토 채팅방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가상 연인관계를 유도했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결국 김양에게 성인이 되면 결혼하겠다고는 혼인서약서까지 작성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아버지는 2022년 1월 말 한국과 캐나다 양국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인 38세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김양의 아버지에게 위 사건에 적용될 법조항이 모호하고 비슷한 선례도 없을 뿐더러 외국에 체류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답했다. 캐나다 경찰은 신고 당일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과 함께 아이가 거주중인 집으로 출동했고 포렌식을 위해 김양의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김양이 다니는 학원을 찾아가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인계하지 않도록 학원 측에 안내했다고 한다.⁶⁾ 캐나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피의자 체포를 위해 미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례를 언급한 것은 양국 담당경찰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보호 및 온라인 성범죄 대처를 통해 드러나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민해보고 전체적인 법체계를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다.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 적극적인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 피해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현실적인 대응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메타버스의 법률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6) 박고은 (2022. 2. 21). 11살이 겪은 메타버스 성범죄, 캐나다 경찰은 한국과 달랐다. <한겨레>,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929.html



데이터 중심 사회



[그림 1] 넷플릭스 무비 <돈룩업> 소개화면¹⁾

1) <https://www.netflix.com/title/81252357>

넷플릭스 화제작 <돈룩업(Don't Look Up)>은 우리사회가 매일 경험하는 양극화 현상 외에도 풍자적 시선이 가득 담긴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많다. 그 중에서 한 거대 빅테크 기업 CEO는 알고리즘에 기반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사의 알고리즘에 따르면 주인공 민디 교수(테오나 르도 디카프리오)가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영화의 배급사이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용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활용하고 예측한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는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콘텐츠를 추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플릭스는 해외 시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국가의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뤄왔다.

데이터 기반(data-driven) 사회는 미디어 이용뿐만 아니라 직업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의 글로벌 취업플랫폼 <글래스도어>는 매년 최고의 직장과 직업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2022년 발표된 '최고 직업 Top 50(50 Best jobs in America for 2022)'의 면면을 살펴보면, 1위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Enterprise Architect), 2위 풀스택 엔지니어(full-stack engineer), 3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ata Scientist) 등이다. 이 목록에서 전통적으로 촉망받던 직업군, 예컨대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을 순위 앞부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 중심의 사회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Job Title	Median Base Salary	Job Satisfaction	Job Openings
#1 Enterprise Architect	\$144,997	4.1/5	14,021
#2 Full Stack Engineer	\$101,794	4.3/5	11,252
#3 Data Scientist	\$120,000	4.1/5	10,071
#4 Devops Engineer	\$120,095	4.2/5	8,548
#5 Strategy Manager	\$140,000	4.2/5	6,977
#6 Machine Learning Engineer	\$130,489	4.3/5	6,801

[그림 2] 50 Best Jobs in America for 2022²⁾

2) 50 Best Jobs in America for 2022. (glassdoor).

URL: https://www.glassdoor.com/List/Best-Jobs-in-America-LST_KQ0,20.htm



기술 발전과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돈록업〉이 풍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실제 미국의 현실에서 조금 더 살펴본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사상의 자유시장론(Marketplace of Ideas)’ 등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가 확고하게 이어져왔다.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어떤 사상과 견해가 옳고 그른지, 또는 가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것이다. 설령 유해한 사상이나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해악을 바로잡는 것은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대립되는 사상이나 표현에 의한 경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허위가 있어야 이를 반박하기 위한 진리탐구 노력이 생성되고 그 결과 사상의 시장론이 작동한다.³⁾

2019년 듀크대학교 필립 마이클 나폴리 교수(Philip Michael Napoli, James R. Shepley Distinguished Professor of Public Policy)는 저서 〈소셜미디어와 공공의 이익(Social Media and the Public Interest)〉에서 소셜미디어의 맥락에서는 사상의 시장론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3) 윤성현 (2013. 12).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지지논변으로서 사상의 시장론. <공법연구>, 제42집 제2호.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18년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에 게재한 논문⁴⁾에서 수정헌법 이론이 가짜뉴스나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과 같은 현대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기술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페이스북(현 기업명 메타)이 자사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을 다룬 내부문서를 고의로 무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연재 기사를 실었다.⁵⁾ 뉴스의 주요 유통 창구로서 전통적인 언론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규제와 책임에서는 늘 한발 물러나 있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한층 가중시킨 사건이었다.

데이터 기반 사회의 언론조정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당연히 언론분쟁의 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조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조정심리의 행정실무 및 사전·사후 연락 등을 담당하며 당사자와의 접점에서 일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이래 유례없는 대량사건을 경험하기도 했다. 당시 2년에 걸친 대량사건의 규모는 18,025건이었는데, 2021년 한해의 조정사건수가 4,278건임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세월호 사건 보도 관련 대량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⁶⁾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비율이 71.2%를 차지하였다. 사건별이 아닌 매체별로 조정심리를 개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량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미디어 환경변화에 걸맞게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조바심을 느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분쟁양상의 빠른 변화, 리걸 테크(legal tech)라고 불리는 법조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 등을 지켜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처리 절차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AI가 판단하는 중재부에서 나의 분쟁을 다루길 바라는 신청인과 언론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조정은 당사자의 양보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다. 다양한 조정 경험과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진 중재부의 구성과 역할은 성공적인 조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조정심리에 앞서 신청인과 언론사 관계자의 관심은 내 사건의 조정가능성이 어느 정

4) Philip M. Napoli (2017. 3. 13). What If More Speech Is No Longer the Solution? First Amendment Theory Meets Fake News and the Filter Bubble,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 Wall Street Journal (2021). The facebook files—A Wall Street Journal investigation, (Wall Street Journal), URL: https://www.wsj.com/articles/the-facebook-files-11631713039?mod=series_facebookfiles

6) 언론중재위원회 (2015).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사례집, 102쪽.

도인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금이 어느 정도 액수일지 등에 집중된다. 또 분쟁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당사자들의 경우 상대방의 진의가 무엇인지, 수용의사는 어떠한지 여부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조정심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한국의 언론조정제도 그리고 조정사건 처리기간을 소개하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익히 알려진바 대로 미국의 행정 처리는 어떻게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속도다. 특히 한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일상이 모바일화, 디지털 중심이 되면서 여러 행정처리가 이전과 비할 수 없이 빨라졌음을 체감한다. 그러나 언론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회복이 어렵고 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뉴스의 주요 유통·소비창구가 된 현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처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있어 주요 개선과제임에는 변함없다.

조정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매체유형이나 침해유형 등 유사한 분쟁에서 원만히 해결된 주요사례를 데이터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정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한계가 있지만 오랜 시간 축적해온 데이터들이 효율적인 사건처리에 기여할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론분쟁 사건 처리의 본질은 언론보도라는 외피에 가려져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읽고 진짜 의사를 밝혀내는 데 있다. 데이터만으로



는 알 수 없는 사람만의 노하우가 응축되어 발휘되는 영역인 것이다.

언론분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지난 10년간 조정사건수가 100% 증가했음에도 중재부는 2014년 이후 1개 중재부가 증설된 이후 변화가 없었다.⁷⁾ 언론중재법상 조정사건은 비록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쟁점파악, 당사자의 의사 확인, 중재부의 협의 촉진역할 등 개별 사건별 충실한 조정심리 진행과정이 필요한데, 매년 언론분쟁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자원과 인력(중재부)으로 인해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활용할 데이터는 결국 분쟁해결 노하우다. 그동안 축적한 조정의 경험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 자원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7) 언론중재위원회 (2022, 3, 2). 지난해 언론조정 신청건수 4,278건, 10년간 100% 이상 증가. URL: https://www.pac.or.kr/kor/pages/?p=41&b=B_1_2&bn=2880&m=read&nPage=1&cate=&f=TITLE&s=

악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플레이 : 주요 이슈와 제언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청년의 어이없는 죽음, 그리고 악플

모든 리플(Reply)이 대체로 악질적이라고 일반화하거나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특정 이슈와 인물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리플의 형태를 모두 통쳐 ‘악플’이라 부르는 것도 무리다 싶다. 또한, 내용상 ‘악플’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런 악플이 모두 다 법적 혹은 윤리적으로 단죄와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다지 설득적이진 않다. 이렇게 리플과 악플에 대해 뭔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주 분명한 비극은 또 어김없이 벌어지고 말았다. 2022년 2월 4일과 5일, 딱 하루 간격으로 불과 27세의 두 청년은 자신을 향한 악플과 교묘하게 진화한 사이버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들은 생전에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비난이 너무나 힘겹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통해, 혹은 지인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악플을 만들어 당사자를 공격함은 물론, 고인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야 있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마도 다수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다. 사건 발생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16만에 육박했고, 최종적으로는 20만 명이 넘는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일보,

2022. 2. 13). 20만 청원의 속내는 아마도, 두 청년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주요 플레이어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지키는 그 준엄한 선을 훌쩍 넘은 악랄한 사람들이라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국, ‘자정작용’이나 ‘인식개선’으로 처리하기에는 이들의 행동과 가해 수준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분노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두 청년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가장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한 행위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일부가 저지른 악플과 사이버 폭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일회성의 부정적 감정 표출이 아닌,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특정한 개인을 찍어 린치를 가한 악랄한 플레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진화하는 악플: 혐오(嫌惡)를 생산하는 그들

먼저 BJ 잼미의 죽음을 살펴보면, 외모와 약물 투약 등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은 물론 그녀의 가족에 대한 내용까지 마구 퍼뜨리던 유튜버가 있었으며, 그의 행적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단순한 불리(Bully)의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흡사 진화된 스토키의 모습으로 고인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양산한 것으로 보이며, 고인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던 장본인이었다. 유가족은 즉시 이 같은 사항을 공론화하였고, “잼미 사망의 원흉”으로 지목된 유튜버는 해명조의 영상을 올리게 된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자신은 관련 이슈들을 단순히 정리만 해서 대중에게 알렸을 뿐, 선동한 적도 죽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음을 주장했다. 더욱 참혹한 현실은, 실제 고인이 생전에 위 인물을 포함한 일군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혐오가 너무나 심각하다며 제발 멈춰달라는 호소가 담긴 영상 또한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BJ 잼미 사례를 통해 더욱 유의해서 파악해야 할 사항은, 주요 플레이어들에 의해 감행되는 혐오의 조직적 생산과 진화된 형태의 스토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도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하는 일반적 차원의 ‘악플’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극도로 악랄한 형태의 혐오를 전달하며 당사자를 진저리치게 만드는 일탈 행위라 할 수 있겠다.

다수의 악플을 작성하며 비이성적 비난을 가하는 일반적(?) 불리에 더하여, 최근 ‘사이버 렉카’로 불리며 오로지 경제적 편익을 목적으로 달려들어 진위와는 상관없이 특정 대상을 혐오의 타겟으로 삼는 부류도 늘어났다. 위에 언급한 유튜버를 포함, 이들은 스스로를 ‘이슈 유튜버’라 부르며 특정 이슈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기능으로 수익을 올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악플을 조직화하고 가장 선정적인 형태로 상대를 비난하며, 극도의 혐오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분노의 공감대가 청와대 청원 수십 만으로 이어졌음도 주지의 사실이고 말이다. 하지만, 잼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후, 한 달여가 경과한 시점에서도 해당 유튜버는 물론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악플러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정의가 실현되었는지, 혹은 실현 예정은

있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아마도 수십 만의 대중이 희망했던 수사나 기소 등 정의의 실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원에 대한 답변 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 입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사람, 배구선수 김인혁의 죽음에도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악플과 사이버 폭력은 개인을 참 잔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갔다. 2022년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명제이지만, '스포츠 선수치고'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려진, 부지런히 자신의 외적 모습을 가꾸던 MZ세대 배구인에게 일부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악플러들은 끝도 없는 비난을 무차별로 확산시켰다. 상대가 더 이상 피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말이다. 사실 일반적인 대중들은 외모에 민감한 젊은 선수들에게 '꽃미남' 정도의 가벼운 별명을 붙여주며, 터프한 플레이와 대비시켜 스타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 자체로 인정하며 선수의 주요 영역인 배구에 대해 평가하고 환호 혹은 아쉬워하는 것이 대중의 몫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악플러들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인 성적 정체성을 운운하며 근거도 없는 공격을 저질렀으며, 배설 수준의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직업의 특성상 대중 앞에 항상 나서야 하는 27세 배구선수에게, 그들은 고인이 차마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의 괴로움을 주려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 논리도, 이유도, 근거도 없는 비난에 의해, 그 또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없애는 방식으로 아픔을 벗어나고자 했다. 비슷한 시기, 동갑의 청년 두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해코지에 의해 하나뿐인 생을 마감한 것이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인가? '사회'가 변해야 사라질 자살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근대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사회 내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언명을 자살론(Suicide: A Study in Sociology, 1897)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자살을 개인의 책임이나 일탈로 치부하려는 오래된 관습에 대해, 아예 다른 논리와 근거를 제공한 것이다. 위 언명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보자면, 자살은 피상적으로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온전히 개인의 영역인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결국 모든 자살에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관여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가정한 것으로 알려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을 디플트로 한다면, 당연하게도 개인의 자살은 그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인들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 또한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물론, 위 언명들 속 '사회'란, 인성을 가진 주체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련 정책과 법, 각종 규정과 독특한 문화, 관습 등 특정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콘텐츠들도 개인의 자살에 원인 변수가 될 수 있음도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자살이 사회적 타살일 수 있다는 가정을 수용하며, 나름의 개선책을 위해 파악해야 할 사항은 바로 그 자살에 관여된 '공모자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작업이 된다. 위 두 사례의 경우, 죽음을 둘러싼 주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은 당연히 특정된 사이버 렉카 등 일부 유튜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비난이 정당한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편승하여 고인을 욕보인 다수의 대중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긴 어렵다. 어쩌면 그들도 이슈 유튜버들과 동급으로 '사회적 타살'이란 명제를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악랄한 사회적 존재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없이 소중한 '사회적 존재'인 고인을 스톡킹 수준으로 따라다니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튜버에 대해 법의 심판을 시작하는 작업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며, 추가적 자살 피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의의 실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련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지분이 있는 그들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한 상태이며, 처벌을 받더라도 정당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의 죄목(예: 사이버상 명예훼손 및 모욕)이 언론을 통해 예측되고 있을 뿐이다. 강한 경종을 울릴 정도의 처벌이 부재하다는 것은, 이런 류의 사회적 타살이 벌어져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리지 않겠다는, 매우 암시적이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강력하지만 일회적인 대중의 비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사법적 처벌의 대상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이 같은 악랄한 플레이의 패턴이 반복되기 위한 더 없는 토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사회적 타살을 자극한 주요 플레이어들에 대한 정당하고 치절한 응징이 추후의 비극을 막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관련 법이나 정책에 대한 완비도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라 믿는다. 사람이 모여 있다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질서와 규칙을 필요로 하며, 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인 장치를 만들어 다수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만 어이없는 비극을 막는 방어 변수가 형성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악플에 대한 심각성과 악플에 의한 유사 사건의 발생이 처음이 아닌 바, 현재까지 논의되거나 구체화된 법적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충분한 법적 조치, 있는가, 없는가, 혹은 망설이고 있는가?

위에 언급한 죽음에 대해 가장 많은 지분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 처벌, 즉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장치들이 존재하는지 파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들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현실적으로 명예훼손 등 상대적으로 강력하지 않은 항목이 대부분이다(테일러안, 2022. 2. 21). 악플은 대체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물론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비방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해당 댓글이 비방의 목적을 가졌으며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도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보완을 목표로 그동안 국회의원 등 입법 관계자들이 기획 및 작성하여 제출되었거나, 제출된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동안 입법화가 시도된 대표적 법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은 2020년 10월 ‘인터넷 준실명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준실명제’의 골자는, 본인 확인을 거친 아이디와 IP 주소를 공개한 상태에서 특정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상임위원회 소위 단계까지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사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여전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유사한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0년 8월 온라인상 모욕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한다. 온라인 내에서 차별과 혐오의 표현으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자살 방조죄에 준하는 무기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었다. 안타까운 점은, 위 법안 또한 상임위에 기약없이 머물고 있다는 난감한 사실이다. 위 두 법안의 운명을 보며, 일종의 데자뷰를 느끼게 만드는 법도 여지없이 소환된다. 2019년 10월 14일 연예인 설리의 극단적 선택과 함께 높아졌던 악플에 대한 여론이 고스란히 투영된 ‘설리법’이 그것이다(아시아 경제, 2019. 10. 23).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으며, 1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당사자가 아닌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악성 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혐오와 차별적인 댓글 등을 불법 정보에 포함시켜, 공격을 당하는 인물 및 해당 사실을 인지한

제3자가 언제든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설리의 죽음이 낳은 파장은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번에는'이라는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나 마무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폐기되는 것도 수순이었다(데일리안, 2022. 2. 10). 올해 발생한 BJ 잼미와 배구선수 김인혁의 죽음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구체화가 이루어진 법안도 있다. 그즈음의 보도에 따르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폭력'의 실질적 방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불링, 즉 온라인 괴롭힘을 저지르는 유투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악플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데일리안, 2022. 2. 17).

발의 예정인 해당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언어에 의한 괴롭힘을 제공하는 인물의 행동에 대하여 아예 '폭력'이라 규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전 법안에서도, 온라인상 괴롭힘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폭력에 버금가는 죄임을 기술하기는 했지만, 아예 법안의 명칭에 '폭력'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좋은 의미에서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디 위 법안들을 포함하여 21대 국회에서 악플과 사이버 폭력의 근절을 목표로 발의된 총 7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회기 내 처리되기를 희망해 본다. 물론, 국회 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아무런 반대 없이 처리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일단, 인터넷 실명제 혹은 준실명제 모두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상은 했지만, 위헌 판결의 이유는 표





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었다. 악플 등에 의한 피해는 인지하지만, 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위축될 수 있는 가치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들어,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반대의 목소리 없이 입법화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설득적이다. 사실 법원의 판단만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상임위 소위에서 악플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안을 법사위로 보내자는 주장에 대해 한 의원은, 인터넷기업협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위헌 가능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우려한 준수명제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고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김민정 교수는 “혐오 표현이 득세할수록 이에 직면한 소수자들이 침묵하게 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 총량은 축소된다”라는 논지를 폈다. 더불어, “혐오 표현 규제는 침묵 당하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첨가하였다(내일신문, 2022. 2. 21). 김민정 교수의 주장에 덧붙이고 싶은 사항은, 법이 만드는 득과 실의 아주 기초적인 논리에 다름 아니다. 필자가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법 제정 혹은 개정의 기본적 정당성이란 해당 법에 의한 득과 실을 상호 판단하여 가치와 피해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악플과 사이버 불링, 온라인 폭력 등으로 용어의 심각성이 갈수록 첨증되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은, 일부 서방국가에서는 혐오표현(Hate Speech)과 증오범죄(Hate Crime)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김민정, 2014).

시스템의 공백은 괴물을 낳는다

그동안 도모했던 법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와 합의, 혹은 합의를 위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이 가능한 역사를 말씀드렸다. 발의와 폐기의 과정을 통해 일종의 허탈한 패턴이 존재함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특정한 사건이 터진 시점에는 디지털 공간에 관련 인물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남기는 ‘악플’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쏟아지며 여론은 고조된다. 물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어김없이 따라붙고 말이다. 하지만, “추가적 법적 장치 등 엄격한 제한 장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도 있기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어찌보면 너무나 무책임해 보이는 입장도 다수 언론에 의해 제공된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관련 법의 개정 및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간은 또 번번이 지나왔다. 동일한 패턴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었고 말이다. 사회와 국회가 미필적으로 망각을 선택하는 사이, 표현의 자유를 가장하며 혐오를 만드는 괴물은 또 등장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설리의 죽음이 그러했고, 2022년에도 김인혁과 잼미의 죽음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입법 시스템의 공백에 의해, 우리는 매우 어이없게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 ‘혐오의 자유’를 지켜주며 괴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지속되고 있다. 유가족만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 다른 혐오 장사꾼들은 ‘표현의 자유’를 면죄부 삼아 타겟을 정하고 또 악플을 생산한다. 혐오꾼이자 악플러, 이슈 유튜버로 불리는 온라인 폭력배들은 우리 사회의 침묵을 심분 활용하며 또 다른 죽음이 나올 때까지 또 왕성하게 활동한다.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되어도 감론을박이 있을 것이



고, 그런 와중에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될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생긴다. 공적 시스템에 허술한 공백이 있는 만큼, 괴물은 여지없이 튀어 나올 것이다.

일부이지만, 사적인 주체와 시스템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수행한 경우도 있다. 공적 시스템이 사적 시스템과 기업의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예를 들어, 설리의 죽음이 발생한 직후, 다음 카카오는 트래픽에 대한 우려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적으로 폐쇄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매일경제, 2019. 11. 4). 인물을 검색할 때 자동으로 등장하는 연관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정책도 발표하였다. 포털에 더욱 많은 사용자들이 머물게 하려면 제공 중인 콘텐츠에 관여도를 높이는 장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상식인 바, 포털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미 수년째 표현의 자유와 혐오의 자유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공적 주체들의 활동과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공적 시스템의 공백은, 일선 미디어들의 추가적 이탈도 방조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설리가 죽음 직전까지 출연하던 TV 프로그램 ‘악플의 밤’이 그것이다. 악플의 밤은, 설리가 메인 게스트로 등장하여 자신에게 쏟아지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악플을 직접 읽으며 대화를 전개하는 포맷이었다. 패널로는 연예계 선배인 신동엽과 김숙 등이 등장했다. 설리는 프로그램 방영 후 한 달 여가 지난 시점, 녹화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자택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출연이 설리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더불어 그녀의 극단적 선택에 어떤 수준의 원인이 되었는지 가늠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해당 프로그램의 부주의, 즉 20대 여성이 전 국민 앞에서 악랄한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야만 했던 황망한 상황들은 준엄한 비난을 받아 마땅해 보인다(PD저널, 2019. 10. 21). 무차별 공격으로 너무나 불안했을 20대 여성을 스튜디오에 불러놓고, 명확한 정신적 안전망도 준비하지 않은 채 재미와 시청률을 추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극심한 경쟁의 미디어 환경에서 주목받는 콘텐츠를 만들려는 욕구는 이해하지만, 상당히 사려 깊지 않은 결정이었음은 명확해 보인다.

‘인식개선’과 ‘성선설’만 믿을 수는 없는 상황

필자도 여러 번 그렇게 대답했지만, 미디어 현상과 관련된 특정 이슈가 발생하여 해결책을 질문 받았을 때 기자에게 건네는 말은 ‘관련자와 대중의 인식개선’이었다. 특히나 실제 미디어의 사용자이자 주체이며, 정책 대상자가 되는 ‘대중’의 변화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나를 제언이라고 한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말 그대로 무서운 칼과 다르지 않은 그 무서운 악플에 대해서도, 국민 혹은 대중으로 표현되는 불특정 다수의 인식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인 것은 당연하다. 대중 속에는 ‘악플러’로 불리는 핵심 플레이어들도 있겠고, 그 플레이어들에 동조해서 죄의식도 없이 폭력에 동참

하는 부류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식개선이 중요한 것, 즉 온라인 혐오와 폭력에 대한 궁극적인 근절을 위해 관련자들과 대중의 인식개선이 필수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신속한 억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믿는다. 충분했던 제도 기간이 종료된, 매우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개입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말이다. 경고와 인식개선의 노력, 계도가 갖는 기본적인 성선설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 악플, 일부 사이버 렉카들의 자유로운 혐오 행위에는 전혀 효용성이 없는 컨셉으로 보인다.

최근 악플의 진화 양상을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차라리 혐오를 기본적으로 탑재한 악마에 가까워 보인다. 악플로 극단적 선택을 한 25세 여성의 죽음을 두고, “설리 부검하는 의사는 계탯네, 부럽다!”라며 혐오의 자유를 즐기는 사람들, 밀도 끝도 없는 성별 갈라치기와 성적 정체성에 대한 희롱으로 고인에게 욕을 남기는 사람에 대해 성선설은 사치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 사랑이나, 뉘우침에 대한 가능성, 일회성 일탈에 대한 관용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여전히 인정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처하게 되는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괴로움은 현재 너무나 관대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의와 절규에, 현재 법체계를 운운하며 고소해도 벌금만 감당하면 끝이라며 오히려 압박을 가하는 범법자들에게, 이제 공적 시스템이 대답할 순간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걱정하며 면죄부를 나눠주는 순간, 그들은 숭고한 가치인 그 자유를 혐오의 자유로 해석하여 좌표를 찍고 낙인을 만들어 개인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 행위를 할 때까지 말이다. 얼마 전 발생한 두 청년의 죽음이 바로 전형적 사례이다.



사이버 폭력이 아니라 그냥 폭력 사이버 혐오가 아니라 그냥 혐오

얼마 전 사이버 폭력을 다룬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실제 피해자가 등장하여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을 때 놀란 사항들을 이야기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당한 혐오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과 극심한 심리적 피해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에게 가능한 처벌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는 증언이었다. 더구나, 실제 오프라인에서 1회 정도의 단순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쉽고 무거울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허탈했다는 설명도 덧붙여 주었다. 이는 결국, 악플이나 사이버 렉카를 포함한 이슈 유투버들의 혐오 조장 행동이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이들의 비정상적 행동을 규제 및 억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실은, 2022년 온라인 공간에 대한 입법 담당자 등 관련자들의 낮은 이해와 현실감 결여에 의한 귀결되는 상황 아닐까 한다. 여전히 '온라인' 혹은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오프라인상 폭력이나 혐오에 비해 매우 허술하고 가벼운 처벌만 상정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플이든 뭐든 결국 말이나 글자로 욕했다는 것 아닌가?' 라는 노후한 시각과 함께, 오프라인 폭력이나 혐오에 비해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엄연히 존재하지 않을까 한다. '온라인'과 '사이버' 등 무형의 공간을 의미하는 접두어가 붙으며,



공간의 구분이 마치 죄 자체의 경중과 현저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법의 적용은 물론 대중의 시각에 있어서도, 이 같은 고정적 관념에 대한 개선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에 대해 대중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의 심각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되지 못하며, 다양한 형태에 의해 형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선고되는 범죄임을 자동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력’ 앞에 ‘사이버’ 등 접두어가 붙으며 폭력이라는 용어가 전하는 심각함을 상쇄시키고 있는 경향은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은 더 이상 ‘온라인’이라고 별도로 레이블링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만큼,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장시간 머무르는 ‘실제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실’ 혹은 ‘오프라인’으로 통용되는 일상생활과 굳이 구분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의 리얼라이프라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받아들였던 폭력죄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그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이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 혹은 차라리 가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언해 본다. 사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얼마 전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사례와 유사한 맥락도 없지 않다. 주범인 조주빈과 일당들이 붙잡혀 해당 처벌을 받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그토록 잔혹한 범죄에 대해 공간의 구분을 두며 오프라인상에서의 유사한 범죄에 비해 동일 수준의 심각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마음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았으며, 결국 추적단 불꽃이라는 민간인들이 결정적 증거와 위법성, 잔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단죄가 가능했음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탈 행위라 하여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가볍게 구분하는 오래된 관습을 지양하고, 사이버상 괴롭힘 또한 정확히 폭력과 혐오 등 죄질이 무거운 항목에 해당됨을 전 사회에 공표하고 합의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적 노력이 성과를 만든다: IMC에서 배우기

앞에서도 일부 언급하긴 했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과연 무엇일지 정리해 볼 필요를 느낀다. 너무나 일반적 제언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서 당면한 이슈의 해결을 위해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즉 통합 마케팅 방식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행태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벌어지는 주요 논쟁 중 하나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견 불일치라 할 수 있다. 연예 뉴스 말고도 댓글을 차단하는 공간을 늘리자는 주장에는, 진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근거로 어차피 대중은 또 다른 공간을 찾아 악플의 욕구를 해소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를 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실명제를 기본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박으로 더 이상의 논의를 못하게 만드는 분

위기도 있다. 악플이나 사이버 렉카들에게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 가벼운 처벌 말고 좀 더 심각한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여타 범죄에 대한 처벌에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결정을 보류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일반 대중, 즉 정보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공익광고 등 소통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을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펼쳐지는 것이다. 결국,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가장 유효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으로 안타깝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순위를 따지는 과정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아예 위 사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사이버상 폭력의 감소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접근은 어떨지 제언하는 것이다.

사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노력 중 실제 진행됐던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 오랫동안 감소할 줄 모르던 우리나라 자살률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조직했던 T/F 기구인 국가생명 지키기 추진단의 활동을 들 수 있다. 필자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추진단의 회의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회의의 진행은 물론 추진단이 책임을 맡았지만,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된 개별 사업을 수행한 기관은 너무나 다양했다. 자살 예방 주무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청, 보훈청, 병무청, 심지어 산림청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부처들이 ‘자살률 감소’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각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는 과정을 수행한 것이다. 결국, 자살을 줄이기 위한 통합적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며 단기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악플, 사이버상 폭력 행위, 사이버 렉카 등으로 비롯되는 혐오의 일반화는 해결을 위해 반드시 가능한 모든 노력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이슈이다. 댓글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 내 의견 표명을 위한 실명제 도입, 사이버 내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사이버 렉카 등 혐오를 통해 축적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세무조사, 반복 사범에 대한 신상 공개, 자살 방조죄의 적용 확대, 포털과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방안, 각종 극단적 의견 표명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 노력, 정보 소비자 혹은 대중을 위한 인식개선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믿는다. 일련의 노력을 통해 매우 실제적인 성과, 즉 무분별한 혐오 바이러스에 의해 개인이 죽음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좌고우면하는 중에 피해자는 언제든 또 추가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1)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131-163p.
- 2) 김수아·김민정·이동후·홍성일 (2020).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규제 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203-230p.
- 3) 김형선 (2022. 2. 21). 악플비극 방지 온라인 폭력 방지법 첫걸음. <내일신문>.
URL: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14855
- 4) 김효숙 (2022. 2. 17). 악플, 살인도구가 되다(김효숙의 썩덕썩덕). <데일리안>.
URL: <https://m.dailian.co.kr/news/view/1083985>
- 5) 김효숙 (2022. 2. 10). 살인도구 된 악플...국회서 잠만 자고있는 설리법. <데일리안>.
URL: <https://m.dailian.co.kr/news/view/1080513>
- 6) 명순영 (2019. 11. 4). 다시 시골시골한 악플방지법, 인터넷 준실명제 급물살...위험 비켜갈까. <매일경제>.
URL: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9/11/904168/>
- 7) 구재은 (2019. 10. 23). 혐오악플 차단, 삭제..설리법 근주 중 발의. <아시아 경제>.
URL: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2309474623884>
- 8) 채혜선·양수민 (2022). 논란 뒤에도 걸그룹 코 성형...극단선택 비웃는 사이버 록카.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727>
- 9) 박수선 (2019. 10. 21). JTBC 악플의 밤 4개월 만에 폐지. <PD저널>.
URL: <https://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79>
- 10) Durkheim, É. (1897).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 Spaulding, John A. New York: The Free Press(1979).

뉴스로 구독자를 모으겠다고요?

송승환 중앙일보 금융팀 기자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 구독 중이세요?”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에서 생방송을 보다가 후원(슈퍼챗, 별풍선 등)을 해본 적 있나요?”

요즘 내가 회사 선배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이다. 최근 회사에선 구독 모델이 앞으로 우리의 살길이라고 강조한다. 기존 도메인과 가입자 정보를 버리고 큰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뒤 새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거나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받아야만 볼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의 비중도 늘리고 있다. 앞으로 유료 구독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한다. 많은 언론사가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회사 선배 중에 유튜브 등에서 특정 채널에 애착이나 충성심을 느껴서 구독 버튼을 눌러봤다는 분이 별로 없다. 구독 중인 채널이 있다는 선배 중에 후원을 해줬다는 분은 아직 한 명도 못 봤다. 기꺼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는 독자의 마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보내는 시청자가 지갑을 여는 그 순간 하는 사고회로를 한번도 겪어본 적 없는 것이다.

약 7년 전 미국 뉴욕타임스의 ‘혁신 보고서’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퍼스트’ 열풍이 한국 언론을 강타했을 때 뉴스의 미래를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프로젝트에 보조 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내린 진단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콘텐츠에 지갑을 열지 않고, 시장의 크기가 작아서 한국에서 콘텐츠를 유료 구독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환경이 달라졌다. 지금은 구독 중인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매달 돈이 어디에서 결제돼 새고 있는지 단속을 해야 할 정도다. 콘텐츠에 지갑을 너무 쉽게 열고, 시장 크기가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작지도 않다. 넉넉한 사람만 돈을 쓰는 것도 아니다. 요즘 청소년은 용돈을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에 후원하는 경험을 대부분 해 봤다. 그 부모들이 넷플릭스를 구독하거나 IPTV에서 결제해 주말에 영화를 보는 모습도 보고 자랐다.

내가 처음 유튜버에 후원했을 때는 “내 시간을 즐겁게 채워줘서 고맙다”, “내가 하루 24시간 중 이 콘텐츠에 소비한 몇 분이 정말 만족스러웠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광고 시청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이 서너번 연속 들자 굳이 후원하고 싶었다.

일부 시청자는 자신이 후원하는 돈을 ‘시청료’라고 부른다. 생방송 중 “오늘도 잘 봤다. 먼저 나가 봐야 해서 시청료 내고 가겠다”고 유튜버에게 후원금을 보내고 퇴장한다. “이 돈으로 촬영 장비를 바꾸고 편집자도 더 고용하라”고 거액을 후원하는 경우도 봤다. 수신료 인상안을 꺼내면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KBS가 보면 기겁할 장면이다.

이렇게 콘텐츠에 돈을 쉽게 쓰는데 뉴스에만 돈을 안 쓴다. 정확히는 기성 언론의 뉴스에 그렇다. 많은 사람이 포털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뉴스에는 돈을 안 쓰려 하지만 이를 짜깁기해서 포장한 글에는 돈을 쉽게 쓴다. 짠순이인 내 아내가 구독하는 몇몇 뉴스레터의 콘텐츠를 보니 신문 경제면에서 이미 몇 주 전 다 소화된 내용이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언론인과 전문가는 시민 탓을 한다. 왜 신문, 방송 뉴스의 진가를 몰라주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비난만 하냐는 것이다. 정말 시민이 문제일까. 다른 콘텐츠에 이렇게 쉽게 돈을 쓰는데 기성 언론의 뉴스에는 돈 쓰기를 아까워한다면



뉴스가 최종 소비재로서 상품 가치가 사실상 없어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변화의 첫걸음일 것이다.

기존 뉴스가 상품성이 없어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렵게 인정한다고 해도 처방이 엇나갈 때가 많다. 대부분 언론사는 이럴 경우 고품질 기사 생산에 몰두해 상품성을 높이려고 한다. 전보다 더 많이 취재해서 더 공들여서 쓴다. 전과 똑같은 형식의 기사를, 기존 원고지 7매짜리 기사, 1분 30초짜리 리포트를 더 잘 만들어서 내놓지만 시민들은 외면한다. 또다시 언론인들은 이런 정성을 몰라주는 시민을 탓한다.

며칠 전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한 게 귀에 꽂혔다. “같은 내용도 어떤 포장지를 입히느냐에 따라 할인 마트에서 파는 기사가 되기도 하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브랜드가 되기도 한다.” 그때 ‘왜 포장지를 마트용 아니면 백화점용만 사용하는지’ 묻지는 못했다. 우리가 고급 포장지라고 사용한 게 요즘 많은 시민에게는 여전히 상품 가치가 없게, 돈 내기 아깝게 보이는데 말이다.

이솝 우화 중 ‘여우와 두루미’란 동화가 있다. 서로 상대를 잘 대접해주고 싶어서 여우는 두루미에게 넓은 접시에 요리를, 두루미는 여우에게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서 줬더니 먹지 못하고 결국 사이가 나빠졌다는 내용이다.

지금 기성 언론이 하는 고품질 기사 만들기가 딱 이런 식이다. 많은 사람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문법이 좋은데 언론은 신문, 방송 문법의 고품질 기사를 보라고 강요한다. 기자들은 시민들이 기사의 제목과 댓글만 보고 내용은 제대로 읽지 않

는다고 불평한다. 안타깝게도 내 부모님도 유튜브는 열심히 보시지만 내가 쓴 기사는 끈기있게 읽는 경우가 드물다. 요즘 젊은 세대는 원고지 7매나 되는 줄글을 끝까지 읽을 정도로 주의력이 있지 않다. 방송 뉴스도 정장 입은 앵커가 리포트를 소개하는 동안 2배속 재생을 하거나 10초 뒤로 버튼을 누른다. 대신 순식간에 텍스트가 올라가는 단체 채팅방의 글자는 귀신같이 독해하고, 연출이 허술한 유튜브 채널은 생방송 시작 시각 전부터 접속해서 기다린다.

언론사도 이제 새로운 그릇과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요리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대접해야 한다. 이들이 먹기 쉬운, 먹고 싶은 방식으로 말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시도해온 언론사도 있다. 7년 전엔 혁신적이었던 카드 뉴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엔 메타버스까지 여러 방식으로 뉴스를 재포장, 재가공 해왔다. 중앙일보와 JTBC에선 ‘팩플’, ‘앤츠랩’, ‘헤이뉴스’ 등 자랑할 수 있는 뉴스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도는 여전히 가뭇일 수준이다. 대다수 언론사가 디지털뉴스팀을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으로 ‘한 번 시도해 보는’ 정도의 노력만 들여서 운영해왔다. 고급 인력과 대부분의 가용 자원은 여전히 기존의 방망이를 짚는 데 거의 다 써 놓고서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레터 구독자가 급증하기를 바란다고,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건 심각한 모순이다.

한 언론사에서 기존에 있던 유튜브 채널을 없애고 새로 시작해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았다. 마침 동료 기자가 담당했기에 서울 여의도의 한 비싼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사주며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이 친구가 말한 구독의 핵심은 ‘매력’이었다. 결국 예쁘고 잘 생긴 기자만 살아남는 세상이란 거냐. 여기서 말한 매력은 외모에서 나오는 매력보다 더 넓은 개념이었다.

그동안 방송 뉴스 기자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외모와 옷차림이 필요조건 중 하나였다. 요즘은 허술해 보이는 것도 기자의 매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시청자와 함께 황당한 질문을 하면서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배워나가는 게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내용을 더빙을 통해 재밌게 설명해주거나,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등의 방식은 기존의 신문, 방송 기자에겐 허용되지 않았던 매력 표출 방식이다.

시청자는 여러 기자 중 자신의 취향을 저격하고 매력을 주는 바로 그 기자가 전달해주는 뉴스라면 언제든 듣고 싶고, 믿고 싶게 된다. 이게 구독 모델을 바탕으로 한 저널리즘이 될 것 같다는 설명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유명 유튜버들이 소속된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는 크리에이터를 뽑는 기준 중 ‘인물의 매력’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이 뭘 해도 좋은 거”라

고 설명한다. 2022년 구독 모델이 지향하는 기자의 모습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이 사람이 뭘 말해도 믿어줄 수 있는 거”라고 설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다양한 취향에 맞는 매력을 뉴스와 기자가 갖춰야 하는 이유는 신뢰받기 위해서란 점이다. 잘 생겼는데 못 미덥고, 쉬운데 정확하지 않고, 웃기는데 웃기기만 하면 뉴스와 기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갖춘 기자와 뉴스를 시민이 구독하는 모델이 자리를 잡으면 추락한 저널리즘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업보를 풀기 위한 긴 시간의 속죄가 필요해 보인다.

요즘 취재 현장에서 시민이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말 그대로 살벌하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을 때 서울 홍대의 한 식당에 인터뷰를 요청하러 들어간 적이 있다. 식당 주인은 식칼을 들고나와서 마이크와 방송 카메라를 든 우리를 쫓아냈다. “언론 너희 때문에 더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 취재를 가면 요즘 피해자들이 쉽거나 장례식장에 ‘기자 출입 금지’ 또는 ‘취재 사절’이라고 적힌 종이를 입구에 붙여놓는 경우를 종종 맞닥뜨린다. 곤경에 처한 사람, 억울한 사람, 사회적 약자가 기자를 오히려 피한다. 기자를 만나면 골치 아파지고 더 상처가 커진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취재하라고 시민에게 임시로 위임받은 권한을 내 것처럼 휘두르다가 신뢰를 잃은 탓이다. 현장에서 많은 저연차 기자들은 선배들이 쌓아놓은 간 업보를 짊어지고 취재하고 있다. 2021년 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외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할 때 기자 출신 중진 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우리 때는 기레기란 말이 없었는데 요즘 기자들이 기레기란 말을 듣더니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언론의 저널리즘이 신뢰를 잃은 사이 다른 주체의 저널리즘이 신뢰를 얻고 있다. 지금까지 저널리즘은 언론이 하는 일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졌지만 앞으로는 아닐 것 같다.

저널리즘이 해야 하는 여러 기능 중 하나는 ‘알고 싶은 이야기를 책임감 있게 전달하기’다.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전달하기인데 알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전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과장을 섞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내용을 보태서, 불리한 내용은 빼고 전달하는 이야기는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다. 믿어도 될 정도로 알고 싶은 이야기를 책임감 있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언론이 책임감을 내려놓는 사이 많은 유튜버가 책임감 경쟁에 뛰어들었다. 신뢰를 경쟁력의 자산으로 삼아 구독자를 모으는 언론이 아닌 이야기꾼이 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 역시 저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성능 조작 사태'는 IT 유튜버가 주도해 공론화했다. IT·게임 등 분야의 몇몇 유튜버들이 지적하기 시작한 삼성 스마트폰의 GOS에 대한 불만은 대형 유튜버들이 가세하면서 눈덩이처럼 급속도로 커졌다. 언론이 아닌 수많은 유튜버가 쏟아내는 비판 영상에 결국 삼성전자는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유튜버들이 광고주 삼성전자를 비판해 삼성이 시민과 구독자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저널리즘이었다.

독점적 신뢰 보유자였던 언론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느라 바쁘는데, 헤매는 사이 신뢰받는 이야기꾼 시장은 무한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 이미 대다수의 시민이 자신의 취향과 선호하는 매력에 따라 이야기를 전달받는 채널의 재정렬을 마쳤는데, 언론은 늦게라도 고품질 기사만 만들면 구독자가 늘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언론이 성공적인 안착을 꿈꾸는 구독 모델 시장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많은 연예인이 처음 좌절을 느끼는 순간은 자기 이름을 검색해도 자신의 채널이 노출되지 않을 때라고 한다. 채널만 개설하면 수만 명의 구독자는 금방 모일 거라 생각했는데 수천 명에 머물 때 2차 '멘붕'을 겪는다고 한다. 이미 죽기 살기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학습해 자리 잡은 대형 유튜버를 너무 만만하게 본 탓이다. 수습기자가 기사 쓰기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로 배우고 익숙해져야만 한다.

도전자의 자세로 새 플랫폼에 맞는 문법을 배우는 동시에 오랜 기간 책임 있게 이



야기를 전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새 문법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래서 언론사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 이 자기 증명을 하는 과정이 곧 구독 모델에 맞는 저널리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길일 것이다.

구독 모델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충성도 높은 구독자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는 대개 강성 구독자에 포획될 위험이 크다. 이는 여러 정치·시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초기에는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진보 성향의 방송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조회 수와 후원금을 늘리기 위해 강성 구독자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치우친 발언을 늘리면서 결국 극단주의로 치달아버린 경우가 많다.

언론도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매우 취약하다. 방송 뉴스가 2020~2021년 특정 정치적 성향의 시청자를 끌어오기 위해 서로 ‘매운맛’ 경쟁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균형이 맞지 않는 뉴스 구성과 앵커 멘트,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CCTV 영상들은 시작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갈수록 강성 구독자가 차지하는 수익의 비중이 커지면 더 극단적 이념 대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구독자 입맛에 맞춘, 구독자가 듣기 좋아할 만한 내용의 기사 위주로 제작하고 불편할 기사는 배제한다면 구독 모델을 통해 언론의 수익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널리즘의 품질은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 있다.



언론이 구독 모델로 살아남기 위한 과제를 정리해보면,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뉴스 콘텐츠를 담아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매력 경쟁을 해야 한다. 구독자를 모아서 의제를 형성하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강성층의 극단적 주장과 혐오는 차단해야 한다. 앞으로 플랫폼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겠지만 시민이 결국 책임 있는 뉴스 생산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신과 사회에 건강하다는 것을 납득할 때까지 언론도 무한히 매력을 갈고 닦아야만 한다. 해결할 과제가 너무나 다차원적이다. 하지만 언론과 기자는 도전하고 결국 답을 찾아낼 것이다. 🍀



프랑스의 언론소유권 재편을 위한 '정보의 민주화법' 제안... 향후 변화는?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I.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 2021년 언론의 소유권 재편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 등장했다. 미디어 경제학자 줄리아 카제(Julia Cagé)와 법률가 브누아 위에(Benoît Huet)가 제안한 '정보의 민주화법'이 그것이다. 이들은 2021년 2월, <정보는 공공재다 : 언론 소유권의 재편>이라는 저서를 통해 프랑스 뉴스 미디어 산업의 심각한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뉴스와 저널리즘 영역의 새로운 미래 지향을 제시하는 정책적·법적·제도적인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의 제안은 가속화되고 있는 프랑스 미디어 시장의 독점구조 속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적 언론 모델의 개발을 촉진하고, 더불어 언론지원 시스템을 개혁해 뉴스미디어 생태계의 중심에 시민이 설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카제와 위에가 얘기하는 '정보의 민주화법'의 핵심은 언론 소유권과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있다.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율성과 정보의 민주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인들을 독립 저널리즘 보호를 위한 보증인으로 만들어 정보의 생산을 민주화하고, 시민을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

으로 되돌려 정보의 소비를 민주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이 미디어의 공적 지원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이 소비하는 매체의 주주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이들의 제안은 언론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2021년 11월 프랑스 상원은 미디어 소유 집중에 관한 국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제안한 ‘정보의 민주화법’을 검토해보고, 나아가 미디어 소유 집중 개선을 위한 프랑스 언론인들의 주장과 향후 전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보의 민주화법’ 제안 배경

1. 가속화되는 미디어 시장 독점 구조

프랑스의 뉴스 미디어 산업은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를 정책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1882년 제정된 기본법(〈언론자유에 관한 법률〉) 이후로 사실상 1944년 8월 종전 직후 드골 임시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¹⁾, 프랑스에 처음 민영방송과 유료방송이 도입된 1982년의 개정 방송법²⁾, 그리고 신문 산업의 소유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1986년 개정된 신문법³⁾ 이후로 언론 분야에 관한 그 어떤 법적·제도적 조치도 없었다.

실제로 프랑스의 미디어 시장 독점 구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1984년 신문법 최초 제정 당시 10개의 주요 미디어 그룹이 경쟁하던 신문시장은 현재 단 2개의 복합 미디어 그룹이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로 재편됐다.⁴⁾ 새롭게 등장한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사업자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한 1990년대의 프랑스 미디어 시장은 이제 3개의 대형 이동통신사가 전체를 장악하다시피 하는 거대한 독점 시장으로 변모했다. 30년 전의 입법 사항들은 이제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시장의 독점화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독점화된 미디어 산업으로 언론 독립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1) 정식 명칭은 〈프랑스 언론의 조직화에 관한 1944년 8월 26일자 행정명령(Ordonnance du 26 août 1944 sur l'organisation de la presse française)〉이다.

2) 정식 명칭은 〈방송에 관한 1982년 7월 29일자 법률 제82-652호(Loi n° 82-652 du 29 juillet 1982 sur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이다.

3) 정식 명칭은 〈신문의 법적 지위 개혁에 관한 1986년 8월 1일자 법률 제86-897호(Loi n° 86-897 du 1 août 1986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이다. 1984년에 처음 제정된 이 법률은 신문시장 내의 소유 제한 상한선 30%를 둘러싼 논란 끝에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정을 받고 1986년에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4) 프랑스 언론의 큰 특성 중 하나는 대부분의 언론이 거대 재벌의 통제 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미디어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벌들이다. 일례로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의 대주주는 전투기 제조사인 다쏘(Dassault)이며, 경제지 <레제코(Le Figaro)>의 대주주는 루이비통(LVMH)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 불리는 억만장자, 뱅상 볼로레(Vincent Bolloré)는 2015년 카날플러스(canal+) 그룹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이 그룹의 뉴스 전문 채널을 이용하려 했다. 이후 종사자들이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볼로레는 100명이 넘는 언론인을 해고하고, 채널 이름을 <씨뉴스(CNews)>로 변경한 다음, 탐사보도와 퀄리티 정보가 사라진 동시에 극우적 색채가 강한 채널로 탈바꿈시켰다. 이른바 ‘프렌치 폭스뉴스’가 탄생한 것이다.

나아가 2021년 5월 발표된 프랑스의 두 거대 민영 방송사 TF1과 M6의 합병 소식도 거대 주주의 미디어 시장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합병안은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CSA와 경쟁위원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 전부터 이미 합병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예측이 새어나오고 있다(Bénilde, 2021). 이들이 합병해도 미국 대기업들⁵⁾에 비하면 ‘난쟁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카제와 위예의 대안적 미디어 소유 구조, 그리고 지속가능한 독립 저널리즘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이처럼 현재 미디어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제한,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혜택을 도입할 새로운 입법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5) 여기서 말하는 미국 대기업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등 OTT 플랫폼 사업자이다.

2. 시대착오적인 언론지원 제도

프랑스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다. 프랑스 혁명 이후 1796년, 신문에 대한 특별우편요금을 신설한 것에서 출발하여 2차 대전 직후인 1947년 SJTP(언론에 대한 기술 및 법률 서비스)를 설립하면서 국가의 언론 지원은 제도적으로 정착했다. 이후, 미디어 환경의 다원주의를 보호하고, 새로운 매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언론지원에 할당되는 예산은 상당한 규모다. 2020년 회계연도 재정법안에 따르면 2020년 언론지원 예산은 총 5억5천유로(약 7,468억 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언론이 산업적 위기가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언론 지원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 장-마리 샤롱(Jean-Marie Charon)은 프랑스 언론 지원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 경직성과 변화(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력 부족을 꼽았다. 모든 언론사에 조금씩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은 언론사의 디지털 혁신을 늦추거나, 특별히 허약한 재정 상태였던 언론사가 사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여 그는 신문 배포자 및 관련 회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신문 구매자에게 지불되는 구독에 대한 지원이나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

카제와 위애에 따르면, 기존의 언론 지원 제도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언론사 소유 구조가 거대 재벌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확립돼 중소 규모 언론사들보다는 거대 언론사의 잇속을 챙기는 데 일조해 왔다. 더구나 국가가 개입하는 이러한 언론 지원 시스템은 언론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 하여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알권리와 공적 서비스에 복무하는 언론사들의 등장을 위해서는 언론의 지위에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언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II. 정보 민주화를 위한 주요 제안

1. 미디어 산업 자본의 '신성화', 혹은 대안적인 미디어 소유 구조의 모색

이처럼 해법이 전혀 없어보이는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제와 위애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뉴스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대안적인 언론 소유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카제는 비영리 재단에 의한 미디어 기업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

6) 서면 인터뷰(2020년 9월)

에 따르면, 비영리 재단이 미디어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미디어가 상업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뉴스는 공공재지만 뉴스 생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에 재단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이 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대 이후 프랑스 언론계에서 주목해야 할 소유 구조의 변화로 협회·협동조합(association)의 미디어 기업 소유를 꼽을 수 있다.⁷⁾ 언론 분야에서 비영리 재단 형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퀄리티 정보의 생산을 보증하는 해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주주들이 미디어 산업의 '야심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소속 언론인 수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저널리즘 업무 수단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비영리단체에 의한 언론 운영은 미디어가 유일한 시장 논리와 배당금의 극대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언론사의 공익적 기능과 상업적 목표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카제와 위에가 설계한 프랑스 저널리즘 전체의 미래는 보다 직접적인 시민들을 위한 저널리즘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기업의 자본 구조를 '신성화(sanctuariser)'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이 제시한 독립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법' 초안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이기도 하다.

- △ 언론인뿐 아니라 독자도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 △ 아그레망(agrment) 권리의 일반화, 즉 미디어 기업의 자본 변화에 대한 언론인의 동의 절차의 보장
- △ 미디어 기업의 경영과 소유 지분에 대한 투명성 원칙
- △ 뉴스 생산의 퀄리티 보장을 위한 투자, 즉 최소한의 기자 수를 보장하고 언론사 수익의 상당 부분(35% 이상)을 기자들(뉴스 생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미디어 자본을 협회, 재단 또는 기부 기금과 같은 비영리단체로 이전함으로써 성역화한다는 아이디어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법안이 어떻게 작성

7) 1905년에 창간해 현재도 최대 발행 부수를 가진 지역 일간지 <우에스트프랑스(Ouest-France)>의 협동조합 전환(2018년)이나 '르메디아(Le Mdia)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 혹은 온라인 독립 언론인 <메디아파트(Mdiapart)>, 그리고 지역 일간지들의 공동 소유 프로젝트인 <바렌 재단(Fondation Varenne)>의 사례처럼 영리 혹은 비영리 재단을 통한 기부금을 축으로 소유·운영되는 언론사의 실험도 계속되고 있다.



되었기에 따라 기부 기금은 매체 독립의 수호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여 카제와 위에는 이러한 자본의 형태가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기금(fonds de pérennité)’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지속가능성기금은 무엇보다 영리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그리고 회수 불가능한 형태의 비영리 법인의 주식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미디어 기업의 소유 주식을 점차 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신성화’시켜 나감으로써, 소유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기금은 미디어 자본을 비영리 단체로 이전하여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만, 이 기금의 최대 목표는 기금의 자원을 통해 미디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제안은 궁극적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이 협회, 협동조합, 혹은 재단 형태의 ‘비영리 조직’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규칙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그럴 경우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세부 쟁점들 역시 적지 않다. 이 주식은 상법상 거래에서 어떤 위상과 제약이 부과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기성 미디어 기업들의 전통적인 시장 구조를 근간으로 설계된 정부의 언론 지원 제도 역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2. 언론의 독립을 위한 시민의 실천, 미디어 바우처

카제와 위에가 제안하는 언론 지원 제도의 개혁 방향은 시민이 언론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바로 ‘미디어 독립을 위한 바우처(Bons pour l’indpendance des médias)’의 도입이 그것이다. 뉴스는 공공재이므로 언론을 시장의 손에만 맡길 수 없기에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아닌 시민에 의해 언론이 후원받는 구조를 마련해야 언론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리고 이들에 따르면 그 대안이 바로 바우처 제도의 도입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시민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이상의 매체에 후원할 수 있도록 각 시민에게 매년 10유로(약 1만 3,5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 조건이 있다. 앞서 언급한 언론의 독립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원칙, 즉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 아그레망의 권리, 경영의 투명성, 퀄리티를 위한 투자 등의 원칙 기준을 충족하는 매체에 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자신의 입맛에 맞다는 이유로 비정상적 언론사를 후원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바우처가 소수의 주류 매체, 즉 가장 눈에 잘 띄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덜 취약한 매체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각 매체가 전체 바우처의 1%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과 누가 어떤 매체를 후원했는지 알 수 없도록 익명 후원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 독립을 위한 바우처’가 국가의 개입과 무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언론의 공적 지원 시스템이라 주장한다. 바우처 제도가 다른 대안들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국가의 개입을 피해 언론의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의 언론 지원 시스템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다.
- 부가세 인하 혹은 기타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 지원에 비해서도 더 선호할만하다. 실제로 이러한 조세 지원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미디어나 가장 성공한 매체(예를 들어, 구독자 수를 많이 보유한 매체)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바우처 제도는 거대 주류 미디어뿐만 아니라 소규모 미디어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다원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 아울러 미디어 바우처는 오늘날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는 신뢰도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언론을 회복시키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 즉, 시민과 언론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재창조함으로써 언론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의 제안대로 5,000만 프랑스 성인 시민에게 연간 10유로(약 1만 3,5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면 총금액은 5억 유로(약 6,747억 8,500만 원) 가량이다. 이는 현재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금과 유사한 규모지만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 수준에 그친다. 연간 10유로(약 1만 3,500원)의 바우처 할당은 퀄리티 저널리즘을 구현하고자 하는 언론사에는 턱없이 모자란 비용인 것이다. 다만 공익적이면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규모 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여 저자들은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감안할 때 더 큰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정보의 민주화법에 포함되어야 할 원칙들

카제와 위에가 얘기하는 정보 민주화의 핵심은 언론 소유권과 거버넌스의 민주화에 있다. 언론 소유권과 거버넌스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편집의 자율성과 정보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먼저 언론인들을 독립 저널리즘 보호를 위한 보증인으로 만들어 정보 생산을 민주화하고, 시민을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으로 되돌려 정보 소비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시민은 미디어가 더욱 투명하게 기능할 때 더 제대로 된 정보를 얻게 된다. 또한 시민이 언론을 위한 공적 지원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이 소비하는 매체의 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9가지 사항이 정보의 민주화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피고용인 수가 10인 이상인 언론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감독위원회 혹은 이사회를 포함해야 하며, 그 구성의 절반 이상은 피고용인으로 하고, 그 피고용인의 2/3 이상은 언론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② 언론출판사와 민영방송사의 편집국장 혹은 보도국장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거버넌스 기구에서 임명해야 함. 이 임명이 승인되려면 전체 언론인 50%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 충분한 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한 후보는 동수 거버넌스 기구에 의해 재임명될 수 없음

③ 프랑스 상법 L.233-3조의 의미 내에서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 및 모든 형태의 양도는 회사 내 동수 거버넌스 기구의 아그레망, 즉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양도, 건물 임대 관리 또는 임대 운영 역시 마찬가지임

④ 모든 양도는 어떤 형태로든 유가 증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의 통제권을 보유하는 법인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통제권의 변경 시 동수 거버넌스 기구에 통보해야 함. 공동 거버넌스 기구는 1개월 이내에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동수 거버넌스 기구는 12개월 내에 해당 신문 발행인의 모든 증권을 포괄하는 인수 제안을 제출해야 함



⑤ 언론출판사와 민영방송사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의 인적사항 및 자본 구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자본의 지분을 알리고, 법인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 실소유자의 이름도 공개해야 함. 각 자연인 주주 및 법인 주주의 실소유자들 중 자본의 25% 이상을 소유한 모든 회사 및 경영자가 존재하는 비영리 조직은 자신들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함. 이러한 의무는 종이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에도 해당됨. 신문사는 자신들이 발행한 신문에 분기별로 이 정보를 제시해야 함

⑥ 언론출판사와 민영방송사는 매출의 35% 이상을 피고용인의 임금으로 지출해야 하며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전문기자로 구성되어야 함. 언론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료로 언론인의 보수를 대체할 수 없음

⑦ 언론출판사와 민영방송사는 회계연도 순수익의 70% 이상을 언론사 활동 유지 및 개발에 사용되는 법정 의무 적립금에 할당해야 함. 이 적립금은 배당금 형태로 지급될 수 없음

⑧ 기존 언론 지원(기존의 간접지원은 제외)은 성인 1인당 10유로로 설정된 “언론 독립을 위한 바우처”로 대체되어 각 시민이 자신이 선택한 언론사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게 함.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전체 바우처의 1% 이상을 할당받은 언론사에 지급된 바우처와 마찬가지로)는 모든 시민이 기존에 배포한 다른 바우처에 비례하여 언론사에 재할당됨

⑨ 언론을 위한 지속가능성기금은 하나 이상의 언론출판사 혹은 민영방송사의 지분 증권을 취소할 수 없는 출자로 구성됨. 출자는 한 명 이상의 설립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증여세 또는 상속세

는 면제됨. 이 기금은 언론사 브랜드를 관리하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를 행사하며 언론사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거나 저널리즘 저작물 생산에 자금 조달을 위해 해당 자원을 사용함. 출자된 회사의 자본 증권은 양도할 수 없음

요약하자면 카제와 위어가 제안한 ‘정보의 민주화법’은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언론사를 경영하는 이사회에 언론인뿐만 아니라 독자 대표도 명확하게 포함하여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 언론인이 소속 언론사에 대한 통제권의 변경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아그레망 권리를 일반화할 것, 거버넌스와 소유권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 최소한의 뉴스룸 크기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정보의 퀄리티를 위해 투자할 것 등이다.

IV. 정보의 민주화법 제안 이후

1. 언론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프랑스 언론인들의 노력

언론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언론인들도 나섰다. 2021년 12월 15일, 프랑스 언론인 250명이 ‘언론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문’을 일간지 르몽드를 통해 발표했다(Le Monde, 2021, 12, 15). 이는 2021년 11월 프랑스 상원이 구성한 언론 집중 관련 국회 조사위원회 작업에 힘을 실어 주는 선언이기도 하다.

신문·방송·라디오에 종사하는 250명의 언론인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언론이 소수의 거대 주주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는 언론뿐 아니라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언론 소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선언문 배경에는 당연히 억만장자 뱅상 블로레가 있다.⁸⁾ 프랑스 역사상 한 자본가가 이토록 많은 매체를 한꺼번에 소유한 적은 없었다. 더구나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해왔고,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매체들을 이용해왔다. 그의 미디어 제국에서 언론인들은 해고당했고, 퀄리티 정보는 극우적 색채가 강한 정보로 대체됐다.

물론 기업가들이 거대 주주라고 해서 모든 언론사들이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의 집중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질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보의 해독에 할애되는 공간을 줄이고,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8) 오늘날 그가 이끄는 비방디 그룹은 다양한 텔레비전 채널과 라디오, 신문, 동영상 플랫폼, 출판사 및 주요 프랑스 잡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50명의 언론인들은 다음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 첫째, 프랑스의 방송법이라 할 수 있는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의 철저한 개혁이다. 이 법은 시대착오적이며, 판독이 어렵고, 미디어 소유 집중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둘째, 편집국에 대한 법적 지위의 생성이다. 편집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주주(혹은 그 대리인)의 개입을 제한하며 미디어 거버넌스에 편집국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편집국의 독립을 위해 언론 소유주 혹은 외부의 영향력 행사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소유자와 운영자의 지나친 간섭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뉴스 정보의 정직성, 독립성 및 다원주의 보호가 더 잘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 당국(프랑스의 방송위원회 CSA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관인 Arcom), 각 언론사의 윤리위원회, 저널리즘 윤리 및 중재위원회(CDJM) 등 많은 조직이 이러한 보호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의 각각의 역할과 특권을 지금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법적 틀 내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치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NGO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2021년 10월 중순, 국경없는 기자회는 '시스템 B'라는 제목의 영상을 방송했는데, 이 영상은 뱅상 블로레가 어떻게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망가뜨리는지를 기자들의 증언과 함께 다루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주주의 경제적 이익 보장이 2016년 언론의 독립과 다원주의에 관한 블로쉬법에 의해 부여된 정보의 정직성,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CSA에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먼저, 방송 규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해석”에서 벗어나 “구조화된 원칙”을 적용할 것, 법으로 의무화된 윤리 현장이 경영진만의 독단이 아니라 언론인 대표들과 잘 협상되도록 할 것, 경영진이 임명한 독립 위원회가 진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사람들로 구성되게 할 것 등이었다. 이 단체는 또한 인터넷시대에 '구식'으로 간주되는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송사 주주의 지분 상한선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Carasco, 2021, 11, 24).

아울러 프랑스의 대표적인 독립언론 <미디어파르트>와 탐사보도 전문 영상 매체인 <프리미에르 린느(Premières Lignes)>는 '미디어 크래쉬(Media Crash)'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억만장자들이 민영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보 생산과 미디어 생태계의 배후에서 언론계 거물들이 지위를 남용했을 때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를 알리고자 함이다. 2022년 2월 16일, 프랑스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50개 상영관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관객과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미디어 소유 집중 현상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2. 프랑스 상원, 미디어 소유 집중 조사위원회 구성

카제와 위에의 제안은 언론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2021년 11월 18일 프랑스 상원은 미디어 소유 집중에 관한 국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 조사위는 언론 개혁을 위해 나선 경제학자, 변호사, NGO 그리고 언론인 협회의 제안을 상원이 받아들이면서 출범했다. 목적은 “미디어 소유 집중의 원인과 과정을 조명하고 이러한 집중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경제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에 미디어 소유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당연히 카제와 위에의 제안을 비롯하여, 언론인들의 요구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뱅상 볼로레의 점점 더 거대해지는 미디어 제국과 TF1/M6 합병 발표와 같은 사안이 주로 거론됐다.

이 위원회는 2022년 3월 7일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 청문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뱅상 볼로레를 비롯,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⁹⁾, 아르노 라가르데르(Arnaud Lagardère)¹⁰⁾, 자비에 니엘(Xavier Niel)¹¹⁾, 마르탱 부이그(Martin Bouygues)¹²⁾ 등 주요 미디어 거물들을 비롯 80여 명의 인사들이 40회 가량 진행된 조사위 청문회에 참여했다.

상원의 문화,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의장이기도 한 로랑 라퐁(Laurent Lafon)이 의장을 맡은 이 조사위원회는 21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 대선에 맞춰 3월 29일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는 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의원들 사이의 의견 조율이 힘들어 그리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예상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조사위원회의 다비드 아술린(David Assouline) 의원은 “이미 이 주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마련한다는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말한다. 그는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장

9) LVMH 회장,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엠베스티르(Investir), 부르시에(Boursier.com), 일간지 파리지앵(Parisien)의 거대주주

10) 라가르데르 그룹의 CEO, 월간 파리마치, 주간지 JDD의 거대주주

11) 통신사 프리(Free)의 CEO, 르몽드, 지역일간지 니스마탱(Nice-Matin), 스포츠일간지 파리-터프(Paris-Turf)의 거대주주

12) 부이그 그룹의 CEO, 프랑스 최대 민영방송사 TF1의 거대주주

르의 혼합을 막기 위해 거대 그룹에서의 미디어 활동을 세분화하거나 편집의 독립성 보호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정치 및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경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보에 투자하는 의무를 확립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를 통해 탐사 보도 및 심층보도를 강화하고 언론인들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Wojciak, 2022, 3, 7).

V. 나가며

카제와 위에의 제안은 프랑스와는 상당히 다른 저널리즘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소 이상적인 것으로 들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곱씹어야 할 많은 의제를 던져주고 있다. 카제와 위에는 문제의 뿌리를 30년이 넘는 프랑스 미디어 산업의 소유 구조에서 찾고 있으며, 그것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정책 의제를 구체화했다. 또 논의의 과정에서 종종 소외되기 쉬운 언론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고려 역시 빠뜨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언론인과 시민을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널리즘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무장해야 할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이들이 켈리티 저널리즘의 독점적인 생산자는 아니지만 일차적인 주체인 것은 분명한 만큼, 이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프랑스 언론인들은 질 낮은 정보 자체에 대해 매스를 가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보다는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게 만드는 매커니즘을 개혁하고, 언론이 퀄리티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정보의 민주화법’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한 조치들을 프랑스 상원이 마련할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미디어 소유 집중 규제와 언론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적 토론을 촉발시켰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토론은 우리에게도 시급하다. 카제의 말처럼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널리즘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고 그 경우, 바로 우리, 즉 시민이 검증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위협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1) 진만정 (2021). 공익 저널리즘 구하기: 언론 소유권 재편을 위한 프랑스의 새로운 입법 제안, <미디어정책리포트> 2021년 3호,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2) Aude Carasco (2021. 11. 24). Concentration des médias : une commission et des propositions sur la table, La Croix, URL: <https://www.la-croix.com/Economie/Concentration-medias-commission-propositions-table-2021-11-24-1201186771>
- 3) Julia Cagé & Benoît Huet (2021). L'information est un bien public : Refonder la propriété des médias, Paris: Seuil.
- 4) Le Monde (2021. 12. 15). 250 professionnels de la presse, de la télévision et de la radio alertent : «L'hyperconcentration des médias est un fléau médiatique, social et démocratique»
- 5) Marie Bénild (2021). Fusion TF1-M6, pour lutter contre Netflix?. Le Monde Diplomatique, URL: <https://www.monde-diplomatique.fr/2021/10/BENILDE/63639>
- 6) Thierry Wojciak (2022. 3. 7). Concentration des médias: la commission d'enquête sénatoriale achève ses auditions, CB News, URL: <https://www.cbnews.fr/medias/image-concentration-medias-commission-enquete-senatoriale-acheve-ses-auditions-67638>

배드파더스, 왜 명예훼손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판결 분석 —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로, 2018년 7월 문을 연 뒤 3년 동안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이행을 이끌어 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분창 씨¹⁾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후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였는데, 2022년 2월 위 사이트

1) 운영자가 본인의 실명을 걸고 언론인터뷰 등에 응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본 판례평석에도 그의 실명을 기재하였다.

의 이름을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로 바꾸고 운영을 재개하였다.²⁾

배드파더스가 유명세를 탄 것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미지급 부모의 얼굴, 직업, 직장, 주소를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운영자 구본창 씨와 전 배우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의뢰한 부모들의 주장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초강수 조치로 인해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에서 1, 2심 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엇갈렸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1심은 배드파더스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2심은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이유에서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어떤 근거로 판단을 달리한 것일까.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이유를 하나씩 짚다보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둘러싼 법적, 논쟁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II. 대상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가. 기소까지의 경위 및 1심 판결의 요지

1) ‘배드파더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신상이 공개되었던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은 운영자 구본창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모아(9명 중 7명 기소의견)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이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7명 전원은 구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하였다.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법원이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견대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구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JTBC (2022. 2. 18), 「‘배드파더스’ 이름 바꿔 가동…유죄판결에도 다시 문 연 이유」 참조, URL: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47550#none

그렇다면 판례는 어느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할까. 판례는 일관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은 문언상 ‘타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면, 명예훼손성 사실 적시가 있더라도 그 개인에 대한 가해가 행위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다.³⁾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①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②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③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④ 훼손된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배드파더스 1심 재판부는 구본창 씨가 배드파더스에 적시한 사실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1심 법원은 ①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라는 점, ② 구 씨가 대가를 받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해 왔다는 점, ③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비하, 모욕,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④ 양육비 이행은 여러 사람의 주요 관심 대상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⑤ 무엇보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 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 등을 배드파더스에 적시된 사실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내린 근거로 판단하였다.

나. 유죄로 변경된 2심 판결의 핵심 키워드 – ‘허용되지 않는 사적 제재’, ‘얼굴’ 등

1) 검찰의 항소이유

1심에서 구본창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였다. 검찰의 항소이유 요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과도해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충분히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 대법원은 최근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학회채팅방에 ‘3,000억 원대 ICO(Initial Coin Offerings) 코인투자 사기사건을 목격했다. B가 OOAsset Management의 CEO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거짓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실제 B가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맞았으나 당시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여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조짐이 보였고,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 주된 동기는 B를 비방하는 데 있다기보다 금융업계에서 B와 B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즉, 설사 적시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검찰의 주장은, ①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 ‘촉구’하는 차원이 아닌 ‘압박’하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② 사이트의 제목, 게시글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비하, 모욕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피해자들의 개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공개하였다, ④ 피해자들은 전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私人)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영자 구본창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2) 양육비 문제의 공익성과 사적제재의 허용 범위

2심 재판부는 우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배드파더스와 같은 사적 단체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의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문제가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이 달린 공적인 사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법률상 허용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 제재수단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한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면 이혼을 한 사실,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 등 사생활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데,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양육비 채권 중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3) 사이트의 운영목적, 공개된 신상정보의 인격권 침해 등

항소심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운영 목적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점, 운영자 구분창 씨가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배드파더스의 주된 목적은 사적 압박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을 신속하게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결국 신상정보 공개라는 사적 제재 내지 비난을 수단화하였다”고 실시하였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공개된 신상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이름, 출생 연도, 거주지역, 얼굴사진, 직장명 등 사생활 비밀과 관련한 엄밀한 부분까지 공개한 것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26쪽 분량의 2심 판결문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총 10번이 나오는데, 2심 법원은 “얼굴은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동의 없이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




록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나 유죄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배드파더스가 과도하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글 게시와 삭제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 부모 일방의 제보내용에만 의존할 뿐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나 사실관계 확인 등의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III. 판결에 대한 검토

배드파더스 판결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 내지 사적단체가 상대방을 ‘명예형(수치형)’에 처하는 것이 적당한지, 정당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로 한정해 허용해야 할지, 공익적 목적의 신상공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지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금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해외 입법례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민사적 배상책임을 지우되 형사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논의의 첫 발은 떼었지만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쟁점들과는 별개로 배드파더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이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위 판결이 양육비 이행 문제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침언하자면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나중에 개인에게 이를 구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였다면 우리 사회에 배드파더스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와 피디, 또는 사실과 스토리



김지영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대우교수
서울제4부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편집인



미디어전공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도중,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기자와 피디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자와 피디(프로듀서)는 학생들의 전공이나 미래직업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이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다. 나는 학생들이 저마다 나름의 관점으로 뭐라고 말할지, 어떤 기발한 대답이라도 나올지 기대해 보는데, 대개는 응답이 없다.

피디, 위대한 서사의 힘으로

내 답변은 이렇다. 첫째, 기자는 사실(fact)을 추구하고, 피디는 이야기(story)를 추구한다. 둘째, 기자는 주로 혼자 일하고 피디는 팀으로 일한다.

나는 저널리즘에 대한 강의에서 그 개념을 막 설명하려는 도입부에서 이 질문을 꺼낸다. 저널리즘의 뼈대는 바로 ‘사실’이며, 그러한 저널리즘을 발판으로 사는 직업인이 기자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디가 직접 뛰어들어 다루는 분야에는 물론 탐사보도와 같은 저널리즘도 있다. 하지만 그 본령은 역시 이야기. 즉 서사의 세계다. 거기에는 사실과 함께 허구도 많다.

가깝게 지내는 피디 출신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가 말했다.

“사실이면 다요?”

평소에도 어깃장 놓듯 하면서 정곡을 찌르는게 그의 화법이지만, 이번 경우도 맞는 말이다. 이 세상은 사실이 절대로 다가 아니다. 사실과 함께 허구가 많은 피디의 스토리 세계는 기자들처럼 ‘사실이나,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거기에는 상상과 공상, 환상 등 사실이 아닌 것 뿐 아니라 비현실도 많다. 사실과 허구,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어 그 지평에 끝이 없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 문법을 밟아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이끌고, 비현실이 현실을 좌우하며, 허구가 진리를 낳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면서 지금까지 문명의 꽃을 피워왔다. 허다한 철학과 문학·예술의 작품, 여러 종교의 경전, 신화와 전설·민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던 옛이야기, 현대의 드라마가 모두 그러하다. 누가 단군신화와 그리스 신화, 할머니의 옛이야기, 종교 경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배척하거나 비판하겠는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사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메시지 때문이다. 그것이 이야기의 힘, 서사의 위대함인 것이다. 인류역사는 사실과 허구, 현실과 비현실이 씨줄과 날줄로 교직해온 셈이다.

“의견은 자유이나 사실은 신성하다”

저널리즘과 기자는(법·과학 등의 분야도 그렇지만) 현실의 마당에 사실의 뼈대를 세우면서 한편으론 스토리 또는 피디와 함께 밤하늘의 같은 별을 바라본다.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인터넷 미디어가 정착하면서 마감시간과 지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자 이른바 이야기형(내러티브) 기사체도 등장했다. 전통적인 저널리즘 기사체라면 역삼각형 문장이다. 마감시간 또는 방송시간과 지면공간의 제약 속에서 어떤 상황의 발생으로 문장을 줄일지라도 뒤에서부터 잘라 버리면 메시지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중요한 사실부터 써나가는 형태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인터넷 미디어가 활성화하자 역삼각형 기사체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더라도 이야기형 기사체 역시 역삼각형이 아닌 기승전결형 등 다른 문장구조로 바뀐 것일 뿐 뉴스를 다루는 한, 허구가 아닌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체들은 ‘사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최소한으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두가지다. 먼저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

‘기자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은 뉴스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되거나, 설사 허위로 조작한 정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뉴스가 되기 쉽다. 또는 유언비어나 뜬 소문과 다름없는 ‘카더라’ 뉴스가 될 뿐이다.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1차적 조건은 기사에서 취재원(출처)을 (가능한 실명으로) 밝히는 것이



다. 이같은 '사실'과 '사실의 출처'는 저널리즘의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장치이다. 이 점에 대해 저널리즘 지침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신문윤리는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취재원 보호 등) 부득이 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다음으로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들여다보자.

어떤 사실에 기자 자신의 의견(opinion)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사실기사' 뿐 아니라, 사실에 의견을 붙이는 '의견기사'(사설·칼럼 등)도 마찬가지다. 의견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지만 기자의 의견 때문에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에서는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서는 영국 언론인 찰스 P. 스콧(1846~1932)의 말이 매우 적확하다. 그는 “의견은 자유이나, 사실은 신성하다”고 말했다.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현대 저널리즘의 기초인 '객관보도'의 핵심요소로서 20세기에 들어 이론이 정립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보도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때에 비로소 정확해지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진다는 논리였던 것이다.

공자도 ‘사실검증’, ‘사실과 의견의 구분’ 강조

보도문장을 쓸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는 글쓰기 법은 그러나, 이미 2,500년 전부터 있었다. 중국의 공자가 역사 기술방식으로 제시한 춘추필법(春秋筆法)이 바로 그것이다. 춘추필법은 중국의 경서(經書)인 춘추(春秋)와 같이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대의명분을 밝혀 세우는 논법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객관적인 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과 악’에 대한 의견을 내려 좋은 것은 높이고 나쁜 것은 낮추는, 즉 포편을 하는 것이다.

사실의 검증, 사실과 의견의 구분이라는 현대의 저널리즘 원칙은 2,500년의 시간과 동서양의 공간을 관통하는 보편적 지침인 것이다.

이렇듯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저널리즘 원칙은 지금 붕괴하고 있다. 저널리즘의 뼈대인 ‘사실’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실종의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도 매체들이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한다는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탓이다.

한국이 유난히 그 정도가 심한 편이긴 하지만, 2000년 새 밀레니엄 이후 전 세계가 겪어오고 있는 현상이다. 그 배경에는 시대의 문명적 전환과 그 여파가 있다.

디지털 기술은 미디어 생태계를(물론,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미디어의 형태와 생산, 소비, 유통 등에서 모든 경계는 무너졌다. 자본과 소수 엘리트들이 장악했던 미디어는 언제, 누구라도 소유하고 활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매체, 다양한 매체가 활동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용은 이미 국민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이며 등록된 인터넷 언론매체만 지난해 말로 1만 개를 넘었다. 유튜브 등 1인 매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6만여 개의 뉴스(추정치)가 유통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도 피신청인으로 지목되는 매체 중 인터넷 언론이 70%를 넘는다. 뉴미디어의 사용빈도나 그 영향력은 갈수록 지배적인 영향을, 아니 이미 일상생활로 정착했다.

미디어 혁명은 축복, 저널리즘 붕괴는 혹독한 대가

인류 역사에서 문자 발명이나 구텐베르그의 활자 및 인쇄기 발명에 버금가는 문명의 대전환, 인류는 그 축제를 구가하고 있다. 혹자는 오늘날의 세상을 두가지로 압축해 설명하라면 경제와 미디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혁명이다. 하지만, 혁명은 언제나 진실을 희생공양의 번제물로 요구하는 듯하다. 사실(fact)과 저널리즘이 그것이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보도에는 팩트 자체를 조작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는 물론, 가짜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는 불량뉴스들이 차고도

넘친다. 오늘날 불량뉴스는 하루동안 유통되는 뉴스량의 절반을 거뜬하게 넘지 않을까. 뉴스 소비자들은 음식으로 치면 마치 상한 음식과 같은 뉴스를 상시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 시대(post-truth era)’를 명명한 것이 2016년. 당시 ‘가짜뉴스’가 보여준 파급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4개가 가짜뉴스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1위)거나 ‘힐러리가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3위) 등은 삼시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접하자마자 ‘공유(share)’ 버튼을 눌렀다. 당시 미국 대선기간 중 가짜뉴스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공유된 수는 870만 건으로 주요언론사 뉴스의 인터넷 공유수인 730만 건을 앞섰다. 가짜가 진짜를 이긴 것이다. 뉴스가 사실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해서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불과 6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당시는 그나마 ‘순수의 시대’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사람들은 ‘사실의 검증’이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주장하는 일 자체를 말 그대로 복고풍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편 편향과 수익성 편향, 이 두가지 때문에 악마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킨다. 이들 미디어는 그 특성상 사용자들이 개인의 취향과 신념에 따라 선택하기 좋도록 제작된다. 일반 콘텐츠는 물론이지만 뉴스조차도 기본 수칙인 사실의 검증과,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대신 진영 논리를 내세우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에는 적극적이다. 우리편은 ‘선’이고 반대쪽은 ‘악’이므로 ‘악’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마녀사냥을 한다. 증오와 혐오, 그리고 차별과 편견.

상대방 악마화의 도구로도

세상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평화를 깨트리는 데에 적극적이다. 새천년에 들어 나타난 전 지구적 재앙 세가지를 든다면 기후위기, 코로나, 그리고 뉴스의 탈진실이라고 할만 하다. 지난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예전 유튜브 발언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 사과문은 사건의 성격과 상관없이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을 매우 잘 표현한 것이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의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주로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 운동과정은 과거 어느때보다 수준이 낮았다는 국민적 지탄이 비등하다. 그 이유는 위의 유 전 이사장 사과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잘 드러날 듯 하다.

디지털 미디어가 뉴스에서도 탈진실화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수익 편향성이다. 미디어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모델이라고들 한다. 그럴 정도로 뉴스마저도 존재 가치를 수익성에 두고 사용자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과 편집에 우선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기자는 사실을 추구하고, 피디는 스토리를 추구한다”는 질문을 던지는게 좋을지? 🤖

‘정부의 미디어’는 가능한가?

독일 언론의 ‘국가와 거리두기(Staatsferne)’

원칙과 국정 홍보 사이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라이프치히대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 석사

정부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론사 채널을 빌려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는 국정 홍보 웹사이트를 만들어 직접 정책을 홍보하고, 유튜브 라이브와 정부 소유 방송 채널로 언론사의 뉴스를 대신한다. 언론의 시선이 비판적이고 편향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부의 미디어는 더욱 활발하게 움직인다. 수용자가 국정 홍보를 정부의 PR로 인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채널이 언론과 혼동된다면 그건 언론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 독일은 언론의 경계를 넘어서는 정부의 공보 활동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모든 미디어가 국가의 선전 채널로 기능했던 나치의 역사를 겪었기 때문이다. 언론이 사라진 사회, 모든 언론 채널이 정부의 선전을 위해 메시지를 내보내는 사회를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 민주주의 사회의 출판 언론과 방송 자유가 바로 ‘국가와의 거리두기(Staatsferne)’에서 시작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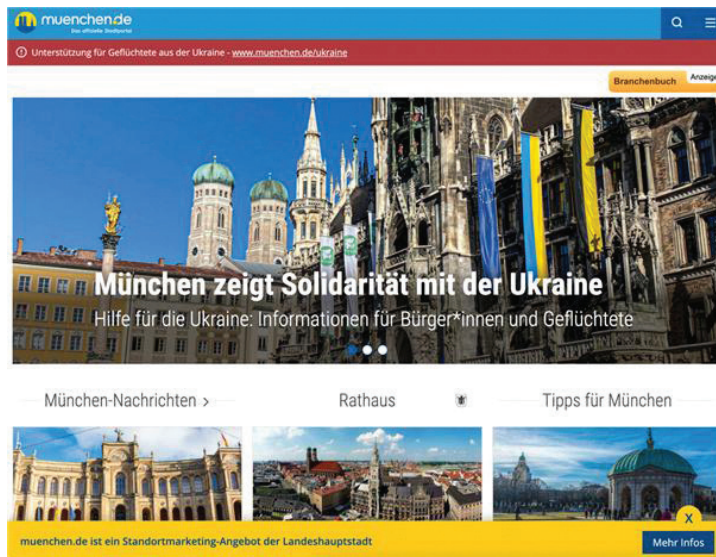
독일 법원, 유사언론 같은 정부 사이트 ‘운영 금지’

최근 독일 법원은 주정부의 웹사이트 운영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웹사이트가 마치 언론사의 웹사이트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정 홍보의 역할은 정해진 한계가 있으며 언론사의 역할까지 떠맡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가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는 과

정에서 언론의 본질과 국정 홍보의 경계를 찾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1월 17일 뮌헨지방법원은 바이에른주 주도의 뮌헨시의 공식 웹사이트(www.muenchen.de)가 언론의 사명인 ‘국가와의 거리두기’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이트는 2004년부터 시작된 뮌헨 공식 포털사이트로 월 방문자 290만 명, 페이지뷰는 월 1,200만 뷰에 이른다. 독일의 지역 정부 웹사이트 중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뮌헨지방법원은 이 사이트가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언론의 사명인 정부와의 거리두기(Staatsferne der Presse)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반경쟁적(wettbewerbswidrig) 행위라고 판단¹⁾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이트가 신문이나 잡지 구입을 불필요하게 만들 만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소개되는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신문이나 잡지를 구입할 때 기대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내용도 단순한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뮌헨 지역에서의 사회적인 일상에 관한 기사가 많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공개된 바이에른 축구팀에 관한 소식은 전형적인 스포츠 뉴스와 같은 내용과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공식 웹사이트가 지역 언론사의 문화, 스포츠, 사회면에 나올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정부의 임무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림 1] 뮌헨시 공식 웹사이트(www.muenchen.de)²⁾

1) LG München I, 2020. 11. 17. – 33 O 16274/19

Landgericht München (2020. 11. 17). Online-Stadtportal verstößt gegen das Gebot der Staatsferne der Presse. URL: <https://www.justiz.bayern.de/gerichte-und-behoerden/landgericht/muenchen-1/presse/2020/24.php>

2) 내용과 구성이 언론사의 웹사이트와 비슷하며, 이는 공보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이 언론사의 사이트와 유사하게 구성된 점도 지적했다. 표제와 부제, 사진, 인용구, 본문 등의 디자인이 언론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구성은 “헌법상 허용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이 사이트가 정부의 발간물이라는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보 활동은 관청의 소식, 지역의 경제진흥, 행정과 시의회 의 현재 업무와 미래 계획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 외 지역 기업이나 민간 영역의 지역 활동에 대한 평가, 일반적인 조언(상담), 스포츠, 예술, 음악 분야의 사회적 사안에 관한 정보는 정부의 공보 활동에 속하지 않으며, 이러한 콘텐츠를 다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1년 9월 30일 뮌헨고등법원의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뮌헨고등법원도 해당 사이트는 “언론의 정부와의 거리두기 원칙을 훼손한다”³⁾고 판단했다. 특히 ‘쇼핑’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카테고리, 행사 및 영화 상영 정보 등은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 정보로 정부 포털에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쥐드도이체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아벤트차이퉁(Abendzeitung) 등 뮌헨에 기반을 둔 언론 출판사가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보 활동이 언론사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허용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었다고 비판했다. 공보 활동은 자신들의 행정 업무를 전달하는

3) OLG München, 2021. 09. 30. – 6 U 6754/20

4) Handel, Stephan & Effern, Heiner (2020, 11, 17). Stadt München muss Online-Portal umgestalten, Sueddeutsche Zeitung. URL: <https://www.sueddeutsche.de/muenchen/muenchen-urteil-stadtportal-muenchen-de-1.5118070>

것인데 뮌헨시는 웹사이트의 다양한 섹션과 카테고리 등을 통해 일상적인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출판사 측은 “한 지역의 사회적인 삶에 관한 언론 보도는 국가가 아닌 지역 언론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광고 기사로 보이는 내용도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뮌헨시는 “(해당 공식 웹사이트는) 뮌헨시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를 홍보하는 명함과 같다”고 항변했다. 관광객들을 위한 정보 책자가 디지털로 전환된 것으로, 긍정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채롭고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도시를 나타내는 도시 홍보 콘텐츠라는 주장이다. 광고 수익도 사이트 운영 비용을 충당할 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2심 판결 이후에도 뮌헨 웹사이트는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 웹사이트에는 “뮌헨시의 도시 마케팅 서비스로 뮌헨시를 광고하며 언론사의 보도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뮌헨시는 현재 연방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도르트문트 법원 “시 정부 사이트가 언론사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도르트문트에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뮌헨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⁵⁾ 뮌헨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사가 연합해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도르트문트지방법원 1심은 ‘(시정부 웹사이트) 너무 언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이트의 문화 행사에 관한 기사 등 개별 사례를 보면 기본법에 명시된 정부와 언론의 분리 원칙에 반한다”면서도 “개별 사례가 아닌 웹사이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⁶⁾ 도르트문트의 포털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 공보 활동을 넘어서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의 양과 구성을 보면 사람들이 이 사이트로 인해 신문을 구입하지 않을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시정부 사이트는) 사실 정보 제공에 국한해야 하며 흥미를 돋우는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사 사이트처럼 구성(디자인)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지역정부의 임무는 언론의 임무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소송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뮌헨과 도르트문트 사례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두 웹사이트 구성의 차이 때문이지, 판결의 기본적인 취지와 원칙은 다르지 않다. 명백한 것은 정부가 ‘유사 언론’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원칙은 2018년 크라이스하이머 슈타트블라트(Craillsheimer Stadtblatt II) 판례⁷⁾

5) LG Dortmund, 2019. 11. 08. - 3 O 262/17, OLG Hamm, 2021. 06. 10. - 4 U 1/20

6) Legal Tribune Online (2021. 06. 10). “dortmund.de” ist nicht presseähnlich. URL: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olg-hamm-4u1-20-dortmund-de-nicht-presseaehnlich-gesamtbetrachtung-revision-bgh/>

7) BGH, 2018. 12. 20. - I ZR 112/17

로 이미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종이신문과 유사하게 편집된 크라이스하임 지역의 관보가 언론과 너무 유사하다며 언론 보도 형태의 공보를 금지했다.⁸⁾ 당시 종이신문과 관보 간의 경계 논쟁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된 셈이다.

정부의 영상 메시지와 '국가 방송'의 경계

정부 기관의 공보 업무와 언론 경계에 대한 논쟁은 정부의 디지털 소통이 강화되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뿐만 아니라 정부의 홍보 영상에 대한 논쟁도 주목을 끌었다. 특히 연방정부가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공보 영상이 '국가 방송'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2005년부터 16년 간 독일을 이끈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연방정부 팟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온라인으로 공개해 왔다. 초창기에는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의 인터뷰어가 메르켈 총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인터뷰 방식이었다가 이후에는 주로 혼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부 영상은 삭제된 것도 있지만 메르켈 퇴임 직전까지 공개된 영상은 450여 건에 이르렀다.⁹⁾ 그 외에도 메르켈 총리의 감성적인 모습을 스케치하거나, 교양 오락의 성격을 띠는 연성 콘텐츠가 연방정부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공유되었다. 언론계에서는 이러한 공보 활동이 언론의 일차적인 게이트키퍼링과 비판을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닿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우려가 컸다.



[그림 2] 독일의 유명 유튜버 LeFloid와 인터뷰중인 앙겔라 메르켈¹⁰⁾

8) SWR (2021. 10. 18). Stadt Crailsheim begrüßt beigelegten Streit um Amtsblätter, URL: <https://www.swr.de/swraktuell/baden-wuerttemberg/heilbronn/amtsblattstreit-zeitungsverleger-kommunen-beigelegt-100.html>

9) 이유진 (2021. 12). 16년 정치 무대 떠나는 메르켈의 마지막 메시지. <신문과 방송>. 서울 : 한국언론진흥재단.

10) 당시 국가 방송 운영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정작 이 영상 자체가 국가 방송과 같은 홍보 영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50emiOryt3c>

메르켈 총리도 비슷한 우려를 드러냈다. 메르켈 총리는 2015년 7월 유명 유튜버 LeFloid와 가진 인터뷰¹¹⁾에서 “인터넷은 내 채널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는 인터뷰어만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체 방송국을 만드는 것 또한 “비판적인 인터뷰어가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인터뷰조차 “전형적인 메르켈 팟캐스트”¹²⁾라는 비판을 받았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언론사 기자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서 인기 유튜버를 이용해 젊은 세대에 선거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터뷰 이후 이어진 연방정부의 공보 영상에서도 비판적 인터뷰어나 불편한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독일의 시사 풍자 코미디언인 얀 뵈머만(Jan Böhmermann)은 2018년 제2공영방송인 ZDF 프로그램에서 “지난 3년간 쭉 지켜봤는데 우리 독일 연방정부가 비밀스럽게 인터넷 방송국 같은 형태로 변하고 있다”¹³⁾고 말했다. 메르켈 팟캐스트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유로운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비판적 저널리즘이니 보고 배우라”며 비꼬기도 했다. 정부의 소셜미디어 채널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연성 콘텐츠를 다루는 것도 지적했다.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다루는 것은 바로 ZDF 같은 방송국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얀 뵈머만은 연방정부 소셜미디어 채널에 관련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연방정부 측은 ‘방송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선형적이고 라이브로 송출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공보 활동은 방송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영상 업로드는 정기적으로 매주 토요일 업로드되었고, 온라인에서 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공보 활동은 결국 방송의 선을 넘는 것이며 곧 정부의 선전 활동과 같다고 그는 비판했다.

연방정부의 디지털 국정 홍보 활동에 대해 독일기자협회도 “총리와 인터뷰를 하는 건 기자들의 역할”이라며 “연방정부의 영상 메시지는 노골적인 홍보이며 해설적 저널리즘이 아니다”¹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은 메르켈 총리의 언론 접촉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메르켈 총리는 22건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전에는 한 해 평균 60차례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불편한 언론을 만날 필요가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 채널을 통해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분도 생긴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언론의 비판적 역할이 빠진 정부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선전과 다르지 않다. 거짓 정보를 바로 잡고,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선한 목적

11) <https://www.youtube.com/watch?v=50emiOrYt3c>

12) Beckedahl, Markus (2015, 07, 13). #NetzfragtMerkel: „Da fehlt der kritische Frager. URL: <https://netzpolitik.org/2015/netzfragtmerkel-da-fehlt-der-kritische-frager/>

13) <https://www.youtube.com/watch?v=853w0xpumTs>

14) Müller-Neuhof, Jost (2019, 10, 31). Merkel zieht sich zurück - von den Medien. URL: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nur-noch-22-interviews-im-jahr-merkel-zieht-sich-zurueck-von-den-medien/25175818.html>



이라도 마찬가지다. 나치 이후의 독일이 기본법과 관련 판례로 엄격하게 언론과 방송의 원칙을 세우고, 정부의 공보 활동을 제한했던 이유다.

그렇다면 정부의 국정 홍보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독일에서 판례로 합의된 국정 홍보의 범위는 첫째, 업무와 책임 영역인 사안에 대해, 둘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나 진행중인 정책에 대해, 셋째,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다루어야 한다.¹⁵⁾ 앞서 소개한 관보 판례처럼 공보의 형태 또한 지켜야 한다. 정부의 발행물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국정 홍보는 이러한 경계를 넘는 순간 국가의 선전이 될 위험이 크다. 독일 연방의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공보 활동은 통신 과정의 중립성을 위협하게 하므로 공공기관은 (공보 활동의) 빈도나 범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정부의 공보 활동은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절제가 요구된다. 독일헌법재판소는 “정부 공보의 경계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곳에 있다”¹⁷⁾고 판단했다. 현 정부의 성과나 성공을 강조하는 공보 활동은 결국 여당의 정당 홍보로 다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⁸⁾

15) Deutsche Bundestag (2007). Zulässigkeit der Öffentlichkeitsarbeit von Regierungen in zeitlicher Nähe zu Wahlterminen, WD 3-453/07

16) Deutscher Bundestag (2016). Staatsferne im Rahmen der Rundfunk- und Pressefreiheit, WD 10-3000-056/16

17) BVerfG, 1977, 03, 02, - 2 BvE 1/76

18) Deutsche Bundestag (2007). Zulässigkeit der Öffentlichkeitsarbeit von Regierungen in zeitlicher Nähe zu Wahlterminen, WD 3-453/07

‘국가와 거리두기(Staatsferne)’ 원칙

언론과 방송의 경우에는 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와의 거리두기’ 원칙을 세우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¹⁹⁾은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 여기서 자유는 다원성과 국가로부터의 독립, 즉 국가와의 거리두기를 의미한다. 언론 매체가 국가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원칙은 역으로 국가가 언론 매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다. 공권력은 자유로운 언론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의 비판과 통제의 대상으로 언론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방송 영역에서 국가와 거리두기 원칙은 국가 스스로 방송사를 소유해서는 안 되며, 방송 프로그램이나 내용에서도 특정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²⁰⁾ 1961년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차 방송판결(1. Rundfunk-Urteil)’²¹⁾에서 연방정부의 방송국 운영이나 참여를 금지했다. 당시 콘라트 아데나우어 정부는 공영방송국 ARD가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국가 방송사 ‘독일방송국(Deutschland-Fernsehen GmbH)’을 설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은 국가가 운영할 수 없고 다원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며 독일방송국의 설립이 기본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에 따라 독일에서 정부(die öffentliche Hand)가 소유하는 방송국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 방송’ 금지는 독일 방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민영 방송에서의 정당의 지분 참여, 그리고 방송의 정치적 도구화 또한 금지된다. 다만 공법(öffentlich-rechtlich) 시스템 안에 있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다양한 정치 사회 조직과 여당 및 야당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다. 신문사와는 달리 한정된 전파 자원으로 선형적으로 작용하는 방송에는 이처럼 특수한 공영 시스템으로 방송의 역할과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안 보며만이 정부의 공보 행태를 비판한 곳도 제2공영방송 ZDF다.

출판·언론 영역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의 영향 없이 언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다. 언론사는 ‘공공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철저한 민영 기관으로 사적 경제 활동의 주체로 규정된다. 사법상(privatrechtlich) 조직된 기관인 언론사에도 정부와 거리두기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언론사는 정치적 논조나 방향성에서는 자유롭지만 국가 중립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동시에 출판 경쟁에 있어서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언론이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는 정부가 특정 언론을 선호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또한 직접적인 영업 및 출판 행위로 언론사의 경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언론사를 소유하는

19)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ttps://www.gesetze-im-internet.de/gg/BJNR00010949.html>

20) Deutscher Bundestag (2016). Staatsferne im Rahmen der Rundfunk- und Pressefreiheit, WD 10-3000-056/16

21) BVerfG, 1961. 02. 28., 2 BvG 1/60 und 2 BvG 2/60, Fundstelle: BVerfGE 12, 205-264.

것 또한 그 자체로 언론사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²²⁾ 다만 정당한 경우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로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해 정당 기관지 형태의 발간물이 허용된다.

독일과 러시아의 국영방송

독일 사회가 소위 ‘국가 미디어’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논란이 되었던 독일과 러시아의 국영방송 분쟁이 이해가 된다. 러시아 국영방송 RT는 지난해 12월 베를린에 지사를 내고 독일어 방송을 시작했다. 그런데 독일에서 방송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대신 룩셈부르크에서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세르비아에 있는 방송 허가를 근거로 독일어 방송을 강행했다. 독일에서 독일어로 하는 방송은 원칙적으로 독일의 방송 허가가 필요하다. RT는 결국 자격 미달로 독일 방송이 금지되었다.²³⁾ 미디어법적으로 ‘무허가 방송’이라는 이유인데, 근본적으로는 국가 방송을 금지하는 독일 방송의 원칙이 배경에 있다. 러시아 ‘국가 방송’인 RT는 독일에서 방송 허가를 신청해도 어차피 허가를 받지 못한다. RT 또한 이런 배경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내 허가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에서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운영을 금지하면서 불거졌다. RT와 도이체벨레를 같은 국가 방송으로 본 것이다. 도이체벨레는 별도 수신료 수익 없이 100% 세금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다른 독일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공법 시스템의 독립적인 방송위원회²⁴⁾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도이체벨레 방송위원회의 경우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 종교계(카톨릭, 개신교, 유대교), 노동조합, 독일언어문학아카데미, 독일문화위원회, 독일대학총장회의, 독일고용주협회 등 정치, 사회, 문화계에서 추천한 인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이체벨레는 “도이체벨레가 RT와 같지 않은 이유”²⁵⁾는 기사를 통해 RT는 편집인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는 매체라고 밝혔다. 국가 미디어를 마치 나치 역사의 재현을 보듯 경계하고, 선을 넘는 정부의 공보 행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독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인 것이다.


22) BVerfGE 121, 30 (61)

23) ZAK (2022. 02. 02). Senden ohne Rundfunklizenz – ZAK untersagt Veranstaltung und Verbreitung des Fernsehprogramms „RT DE“ in Deutschland. URL: <https://www.die-medienanstalten.de/service/pressemitteilungen/meldung/senden-ohne-rundfunklizenz-zak-untersagt-veranstaltung-und-verbreitung-des-fernsehprogramms-rt-de-in-deutschland>

24) Hoffmann, Johannes(2019. 02. 08). Der Rundfunkrat, Deutsche Welle. URL: <https://www.dw.com/de/der-rundfunkrat/a-18713480>, <https://www.dw.com/en/the-broadcasting-council/a-322842>

25) Hein, von Matthias (2022. 02. 04). Why Deutsche Welle is not the same as RT. URL: <https://www.dw.com/en/why-deutsche-welle-is-not-the-same-as-rt/a-60666432>



언론과 방송의 국가와의 거리두기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는 언론사의 친정부적 행태뿐만 아니라 정부의 '유사 언론' 운영도 논쟁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로 전통적인 언론의 경계가 사라진 지금, 독일은 지속적인 담론과 법적 판단을 통해 기본법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디지털 플랫폼의 자유가 정부의 선전을 용이하게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다. 



풍도(馮道)의 처세

박종권 호서대 융합학부 부교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前 언론중재위원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의 1막1장. 천둥 번개와 함께 세 마녀가 등장한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언제 다시 만날지 논의한다. 전투의 승패가 판가름 나고 해가 지기 전 황야에서 맥베스를 만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는 한 목소리로 말한다. “고운 것은 더럽고, 더러운 것은 곱다(Fair is foul, foul is fair).”

이 부분은 번역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옳은 것이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다” 혹은 “맑음은 흐림이요, 흐림은 맑음이다”로 번역하기도 한다. 노자(老子)가 도덕경에서 “아름다움은 추하다. 선한 것은 선하지 않다”고 갈파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통한다.

야구 팬이라면 페어(Fair)와 파울(Foul)이 선 하나를 두고 인(In)과 아웃(Out), 옳음과 그름, 생(生)과 사(死)를 가르는 용어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름다움과 추함이, 선과 악이 어찌 같다는 말인가. 여기에 홍상수 영화감독이 이미 해답을 제시했다. 영화 제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말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던가. 광고 카피 “사랑은 변하는 거야”는 “검은 머리 파뿌리~”를 비웃는다. 기실 사랑이 변하겠나. 사람이 변하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의 됬됨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선 하루에도 열두 번씩이나 변한다고 자조하지 않던가.

주역(周易)을 단 한 자로 압축하면 변화한다는 변(變)일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만물유전설과 같은 맥락이다. 혁명이 군사쿠테타로 제자리를 찾고, 학생 의거가 혁명으로 명명된 것도 그렇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영원불변 확정성이 본디 불가능한 인간 현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 성공했다고 환호작약할 것도, 실패했다고 낙담할 것도 없다. 삶은 계속되고, 오늘 실패가 내일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다. 반대로 성공으로 방약무인 겸손하지 못하면 필히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경고하지 않던가. 총칼로 일어난 자는 총칼에 무너지고,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고 했다. 그저 성공에 겸손하고 실패에 담대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룬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선하게 살면서 덕을 베풀면 복을 받을까. 그렇다면 왜 착하게 산 사람을 꼭 찍어 적선지인(積善之人)이 아니라 그 집안이라는 뜻의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인가. 사람들이 보건대 착하게 살았는데도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간난고통을 겪는 일이 허다해서 그랬을까. 본인은 그렇다고 해도 후손이라도 발복의 경사를 누릴까.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던져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선열의 후손과 일제에 빌붙어 세도를 부리던 친일파 후손의 삶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열심히 일했지만 불투명한 미래에 희망을 접고 장례비용을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소외자들 건너편에 불로소득자들은 명품 사재기에 열을 올리는 기괴한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도 ‘열전’ 첫머리에 이런 회한을 풀어놓는다. “살인과 강도를 일삼은 도척은 천수를 누리고, 착하고 고결한 백이와 숙제는 굶어 죽었으니 소위 천도(天道)는 옳은가”라고 묻는다. 친구 이릉을 변호했다가 치욕스러운 궁형(宮刑)을 받은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래도 사마천은 삶이 베풀 말없는 가르침, 무언지교(無言之教)에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서백(西伯)은 간헐 몸으로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孔子)는 군왕들이 알아주지 않고 고난을 겪게 되어 춘추를 지었으며, 굴원(屈原)은 쫓겨나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左丘明)은 눈이 멀어 국어를 남겼다. 손자(孫子)는 다리를 잘리고서 병법을 논했고, 여불위(呂不韋)는 좌천돼 여씨춘추를 전했으며, 한비(韓非)는 진나라에 갇혀 세난과 고분을 남겼다. 시경 300편은 대체로 현인과 성인이 발분하여 지은 것인데, 모두 마음 속에 울분이 맺혀 있지만 그것을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서술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한 것이다.”

그런 그가 열전에 내세운 인물들은 그 마지막이 슬프거나 안타깝다. 대부분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시대의 영웅들이다. 백이(伯夷)야 불사이군(不事二君)이란 명분으로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고 하지만, 진시황을 도와 중국을 통일한 이사(李斯)는 창업 1등공신 아닌가. 지록위마(指鹿爲馬)로 권력을 농단하던 한날 환관에 불과한 조고(趙高)에 죽임을 당한다. 세난(說難)에서 역린(逆鱗)을 경계한 한비(韓非)는 친구 이사(李斯)에게 독살된다. 진(秦)나라에

법치의 기초를 닦았던 상양(商鞅)은 자신이 정한 법에 따라 거열형에 처해진다. 이사-한비-상양 모두가 법가(法家)로, 요즘으로 보면 법조 출신이란 점이 이채롭다.

뿐인가.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주역 오(吳)의 부차(夫差)에게 승리를 안겼던 오자서(伍子胥)는 말가죽에 싸여 물고기밥이 되지 않았던가.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홀로 깨끗하고, 모두 취했는데 나만 깨어 있다”고 한탄한 굴원(屈原)은 먹라수를 향한다.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관의 먼지를 털어 쓰고, 목욕한 사람은 옷의 티끌을 털어 입는다”던 그는 스스로 물고기밥이 된다. 이처럼 사기열전을 관통하는 하나의 씨줄은 바로 권력무상이다.

가수 김세레나의 ‘청주풀이’는 “낙양성 십리 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로 시작한다. 실제로 중국 뤼양(洛陽)의 황하 기슭 북망산에는 줄잡아 200여 제후급 인물들이 묻혀 있다. 백제의 의자왕도 끌려와 묻혔다고 한다. 문제는 황하가 종종 범람해 지형도 크게 바뀌면서 실제로는 탁류 속으로 유실된 유해들이 많다고 한다. 봉분을 높여도 결국 어복(魚腹)에 장사를 지낸 셈이다.

당대에는 얼마나 평평거리며 살았는지 모르나 지금은 제사는 고사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스가 현세의 영광보다 후세에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길 바란 것도 바다위에 뜬 좁쌀 같은 창해일숙(滄海一粟) 인생이란 점에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워보이들이 자살공격을 감행하며 “기억해 줘~”라고 외치는 장면은 좀 냉소적이고.

움고 그름은 어렵다. 시대정신은 시대에 따라 변할까. 행복과 불행도 유리컵에 반쯤 남은 물처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겠나. 그래서 노자도 장단상교(長短相較),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야 드러난다고 했다.

그렇다. 길다는 것과 짧다는 것은 상대적이다. 젓가락을 예로 들어보자. 이쭉시개와 비교하면 길지만, 전봇대와 비교하면 짧지 않다. 이처럼 길고 짧은 것은 비교함으로써 드러난다. 원래 길거나, 본디 짧은 것은 없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덕경 양신(養身)편에서 아름답고 추함(美醜)과 선하고 악함(善惡)처럼 있고 없음(有無), 어렵고 쉬움(難易), 길고 짧음(長短), 높고 낮음(高低), 음과 소리(音聲), 앞과 뒤(前後)도 마찬가지로 동전 양면처럼 본디 한 몸이라는 통찰이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모든 사안을 있는 그대로 두고(Let it be)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가르침을 행한다는 것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은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한다. 대신은 일종의 폭기조(曝氣槽)이다. 정체돼 썩은 물에 산소를 주입하는 거다. 비록 물이 뒤집어지면서 더욱 혼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산소라는 생명력을 머금게 되는 거다. 이후 침전과 약품처리를 거치면 다시 맑은 물이 되는 거다.

중국의 오대십국(五代十國)은 정치적 혼란기였다. 조금 과장하면 눈을 뜨니 정권이 바뀌어 있는 식이다. 이 시기에 풍도(馮道)라는 인물이 있다. 황소의 난으로 어지럽던 당(唐) 말기에 태어나 후



량-후당-후진-후한-후주에 이르는 5왕조의 11군주를 모셨다. 평가는 천하의 간신배에서 명재 상까지 극과 극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송(宋)대의 사학자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풍도를 비난한다.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은 얼굴이 어여쁘고 바느질 솜씨가 좋아도 정숙하다 할 수 없으며, 충성스럽지 않은 신하는 재능이 많고 공적이 뛰어나도 훌륭하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침에는 서로 원수였는데 저녁에 임금과 신하 사이로 변하자 표정과 말투를 바꾸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비록 착한 일 좀 몇가지 했다고 어찌 괜찮다고 할 수 있느냐고 평가했다. 이후 풍도는 절개도 염치도 없는 인물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이 또한 그때는 맞고 지금을 틀린 이야기인가. 세월이 흘러 명(明)대의 사상가 이탁오는 장서(藏書)에서 “오대십국의 혼란기에 백성들이 전란의 참화를 그나마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풍도가 백성을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도록 노력한 덕이다”고 극찬한다. 맹자가 “사직(社稷)이 중요하지 임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정치의 요체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사직’을 풀어보면 사(社)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직(稷)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즉 백성이 중요하지 임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풍도와 같은 인물을 굳이 우리 현대사에서 찾자면 고건 전 총리가 있겠다. 박정희 시대에 관료로 입신해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장관으로, 총리로, 시

장으로, 정부의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봉직했다. 이런 이력은 그가 공직자로서 유능하기도 했지만 무색무취(無色無臭)한 정치성향 덕분이란 분석도 있다. 그보다는 맹자가 말한 임금보다 사직, 즉 대통령보다 국민의 안양(安養)을 우선했기 때문이라. “만인과 다투지 않고, 실무를 중시하라”는 풍도의 좌우명은 고건의 처세와 꼭 들어맞지 않은가.

비슷한 인물로 조선시대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을 들 만하다. 선조-광해-인조를 거치며 공직생활 64년 가운데 40년을 재상으로 봉직했다. 임진왜란은 이조판서로, 인조반정은 영의정으로, 정묘호란은 영종추부사로 극심한 혼란기를 관리했다. 그가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초가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었던 청백리로도 유명하다.

목민심서의 다산 정약용도 시를 지어 “이 한 사람으로 사직의 평안함과 위태로움이 달라졌고, 백성의 여유로움과 굶주림이 달라졌다”고 칭송했다. 바로 맹자가 말한 ‘임금보다 사직’이 아닌가. 임진왜란 때 “신(臣)에게 아직 배가 12척이 남아 있다”고 했던 충무공 이순신도 “이나마 수군이 유지된 것은 내가 아니라 상국(이원익)의 힘이다”고 공을 돌렸다.

강이 구불구불 흐르는 이유는 여기저기 널리 적시기 위함이다. 역사의 강도 그렇다. 그 강물에 부러진 나뭇가지와 헤진 나뭇잎들도 앞다퉈 떠내려간다. 기슭에서는 크고 작은 물거품이 서로 붙었다 떨어지며 눈치를 본다. 종종 굽이칠 때면 거슬러 흐르는 듯 제자리 맴도는 듯 착시도 일으킨



다. 폭포로 떨어진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다. 유수부쟁선(流水不爭先), 흐르는 강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간혹 강물위에 등실 떠내려가는 나무 등걸은 자신이 강물을 이끄는 것으로 착각한다. 민중의 손에 들려 펄럭이는 깃발은 자신이 역사를 이끈다고 착각한다. 굽이 없는 강물이 없고, 고비 없는 역사는 없다. 부유물은 흐름의 가늠자일 뿐이며, 깃발은 응집된 민심의 표지일 뿐이다. 나폴레옹의 부침도, 오바마 등장도 그렇다. 하물며 지킬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보수와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 진보가 무슨 흐름의 추동력이겠나.

풍도는 최소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리더의 역할을 알았다. 집이 쓰러지는 것은 비바람 때문이 아니라 사전에 손보지 않은 게으른 주인 탓이다. 배가 좌초하는 것은 바다 때문이 아니라 선장의 무능과 선원의 무언(無言) 탓이다. 언젠든 비바람은 몰아치고, 바다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가.

옛날이든 현대이든 정치는 메시지이다. 그 중에서도 인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다. 과연 오대십국의 왕들은 풍도를 계속 중용함으로써 백성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졌을까. 옥새를 두고 각축하는 그들만의 권력다툼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일상에 매진하라는 뜻일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자신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간직하면 일신이 평안하리.” 풍도가 지었다는 설시(舌詩)도 좀 헛갈린다. 관료주의자로서 출세의 비결을 읊은 것인가, 망나니 권력에 대한 경계인가.

봄날에 풍도를 꿈꾸는 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요란하다. 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권력은 밤하늘의 달과 같다. 때를 만나면 보름달로 뜨겠지만, 이내 이지러지고 스러진다고. 권위는 별과 같다. 먼 하늘에서 반짝일 뿐이지만, 역사의 밤에 방향을 제시한다고. 🌕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202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1월 10일(월) 발족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일 전후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데요. 출범 당일 열린 첫 회의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장에 김선중 법무법인 신경 대표변호사, 부위원장에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위원회 경기 강원 경남사무소 이전

위원회 경기·강원·경남사무소가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심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기사무소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에서 9층으로 자리를 옮겼고, 강원사무소는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 춘천사옥 1층으로, 경남사무소는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7층으로 이전했습니다.

2022년 1차 일반인 연수 실시

위원회는 3월 22일(화) 2022년도 1차 일반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유튜브상의 인격권 침해와 혐오', '절차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주제로 한 2개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2차 일반인 연수도 추후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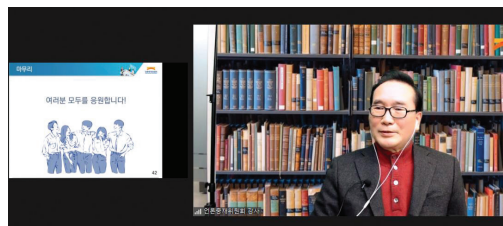
위원회 발간 간행물 검색 서비스 개시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계간 <언론중재>, 위원회 주최 세미나/토론회 자료집 등 위원회가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인격권' 등 언론법제 관련 핵심 주제를 입력하면 위원회가 창립 이후 축적해온 연구물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행물 검색 서비스는 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자료실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차 예비법조인연수 실시

위원회는 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제1차 예비법조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언론법제 및 미디어 현안 관련 다양한 전문가 강연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77명은 언론피해구제 제도 등 관련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모의조정 시나리오 작성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법조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제2차 예비법조인연수는 오는 8월 실시 예정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1년 연간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과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발행된 2021년도 연간보고서에는 조정사건·시정권고·선거기사심의 등 위원회 주요 법정사업의 2021년도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를 비롯해 언론피해 상담,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조사연구 활동 등 위원회 일반 업무 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 연간보고서 전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 정보 자료실 > 정기 간행물 > 연간보고서에 게시돼 있습니다.

2021년도 위원회 주요 법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조정사건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 : 2021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4,278건으로 2020년 3,924건 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정사건은 매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도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 청구가 1,832건(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1,372건(32.1%), 반론보도청구 870건(20.3%), 추후보도청구 204건(4.8%)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조정사건의 침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4,123건(96.4%)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66건(1.5%)·재산상 손해 47건(1.1%)·음성권 침해 13건(0.3%)·사생활 침해 12건(0.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8개 중재부가 2,969건(69.4%), 지역 10개 중재부가 1,309건(30.6%)을 접수·처리하였고, 지역 중 경기중재부는 390건(9.1%)으로 서울 1개 중재부의 평균 처리 건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할 구역이 넓고 소재 언론사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221건(28.5%), 취하 1,216건(28.4%), 조정불성립결정 894건(20.9%), 기각 596건(13.9%), 직권조정결정 219건(5.1%), 각하 132건(3.1%)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리결과에 기반 2021년 피해구제율(조정심리 결과와 무관하게 정정 혹은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은 62.7%로 2020년의 67.8%에 비해 5.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1년에는 1,372건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실제 금전배상이 이뤄진 것은 74건(5.4%)이었고, 최고 인용액은 15,000,000원, 평균액은 2,085,000원, 중앙액은 1,000,000원 이었습니다.
- ▣ **시정권고 현황** :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자발적으로 법익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2,641개 매체를 모니터링하여 366개 매체를 대상으로 총 1,291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들 결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침해 유형은 '사생활 침해' 등으로 517건(40.0%)이었고, 그 뒤로 기사형 광고 182건(14.1%), 자살 관련 보도 156건(12.1%),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101건(7.8%),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61건(4.7%) 등 순이었습니다. 위원회 시정권고 결정 1,291건 중 793건에 대해 언론사가 수용하고 보도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 **선거기사심의 현황** :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 매체를 대상으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심의기준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도)를 자체적으로 또는 후보자의 요구에 따라 판단하여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2021년 7월 11일 출범하여 2022년 4월 8일 활동 종료 예정)는 2021년 12월 말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객관성 및 사실보도 조항 위반 22건,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17건 등 총 39건에 대해 경고 9건, 주의 27건, 권고 2건, 안내문 송부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बो호에서는 새로운 인격권 보호체계와
피해구제에 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호가 변화하고 있는 인격권 관련 연구 영역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발간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 연 3회 발간(4월, 8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획논문
주제

[유튜브의 자유와 한계]



연구논문
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발간일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발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팀(02-397-3042)으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